

2015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심포지엄

- 일시: 2015년 9월 4일 오전10시30분
- 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주다홀

사회 :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발표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자립, 가능한가?	
	- 위선주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박사 수료).....	1
토론	온드라흐 (전 서울시 외국인 명예 부시장).....	83
	주선희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회장)	85
	고미경(단아)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	87
	윤지윤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주무관).....	95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자립’, 가능한가?:

쉼터 입소 이주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I. 서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방법
3. 조사 대상

II. 한국에서의 가족생활

1. 가족 재생산을 위한 도구화
2. 사회적 고립
3. 동등한 가족 구성원 지위 불인정

III. 경제활동을 위한 자원과 한계

1. 기존 노동경험
2. 한국어 구사 능력
3. 사회적 관계망
4. 자녀 양육

IV. 여성가족부 쉼터 정책이 이주여성의 자립에 미치는 영향

1.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의 역할과 실태
2. 여성가족부 쉼터 정책의 한계와 딜레마

V. 제언

1. 조사 결과 요약
2. 제언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자립’, 가능한가?”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상임대표 한국염

폭력피해를 당한 이주여성들이 이주여성쉼터에 와서 개중에는 절망으로 자포자기하면서 무기력한 이들도 있지만 이제는 폭력에서 해방되었다고 안도하는 이들과 나름 새로운 삶을 구성해보는 이들을 보면서 쉼터가 갖고 있는 의미와 가능성, 그리고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그런데 쉼터에 거주했다 퇴소하는 이들이나 퇴소를 앞둔 이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퇴소를 앞둔 이주여성들의 입장이 여간 난감한 게 아니다. 모아놓은 돈이 없기 때문에 거처할 방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쉼터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쉼터에 거주하는 이들이 어떻게 자립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끊이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나 쉼터에서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 같고 오랜 기간 고민만 하다가 대안모색을 위해서 우선 쉼터의 여성들의 경제적 실상은 어떤지, 쉼터이후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고민은 무엇인지, 자립을 위해 쉼터에 무엇을 기대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자립’이 무엇인지 개념규정을 하고 조사에 임해야 하나 쉼터 현장에서 우선과제가 경제적 자립이라고 보아 이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나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실태조사는 위선주, 이안지영, 김윤희, 레티마이투(한가은), 허오영숙 5명이 연구팀을 구성해서 실시했으며, 설문과 분석, 해석과 과제제안까지 워크숍으로 이루어졌다. 이 작업에 참여한 연구자, 자문 위원 강성의, 김이선, 김현미, 쉼터 관계자들, 통역자들에게 감사한다.

이 실태조사는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의 ‘자립’이라는 주제로 한 최초의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계도 있다. 여기서 제안하는 과제는 기초과제로서 이 제안을 시작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본격적인 자립논의의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2015년 9월 5일 승인동에서.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자립’, 가능한가?:

쉼터 입소 이주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폭력 피해 이주여성 조사 기획팀

(김윤희, 위선주, 이안지영, 한가은, 허오영숙)

I. 서(序)

1. 조사 배경 및 목적

세밑을 하루 앞둔 2014년 12월 30일, 서울의 대한문 앞에서는 <살해당한 이주여성들을 위한 추모제: “우리는 살해당하러 오지 않았다” >가 열렸다. 2014년 한 해 동안 적어도 8명의 이주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살해당한 것을 기억하고 여성들을 추모하기 위해서였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 추모제를 공동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주여성들의 폭력 피해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꼈다. 2010년 부산에서 발생한, 입국 일주일 만에 남편에게 살해당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추모하는 이주여성들의 기자회견 이후 2013년 한 해를 제외하곤 매해 추모행사가 열렸고, 더 이상 이주여성들이 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마냥 지켜만 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다.¹⁾

국제결혼은 90년대 이후 점차 늘어나다가 2005년 정점을 찍으면서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었다. 국제결혼 건수는 2005년에 가장 많아 40,000건이 넘었고, 한국

1) 2010년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故타티황옥을 추모하는 이주여성들의 기자회견 <나도 그 베트남 여성일 수 있습니다>(2010.7.20. 국가인권위 앞)가 개최된 이후, 2011년에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故 황티남의 죽음을 계기로 가정폭력으로 살해당한 이주여성들을 기리는 <가정폭력으로 살해당한 이주여성 추모제>와 추모행진(2011.6.2. 국가인권위-여성가족부)이, 2012년에는 조선족 출신 결혼이주여성 故리선옥, 故김영분 사망을 계기로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주여성 추모집회: “이주여성들이 죽지 않을 권리” > (2012.7.18. 서울, 대한문 앞)가, 2014년에는 연달아 발생한 이주여성 사망 사건을 계기로 <살해당한 이주여성들을 위한 추모제: “우리는 살해당하러 오지 않았다” >(2014.12.30. 서울, 대한문 앞)라는 추모행사가 열렸다. 2013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추모행사가 열릴 만큼 이주여성들의 사망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 건수 역시 같은 해에 30,7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1> 한국인과 외국인 혼인 추이

(단위: 건)

년 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한국남성+외국여성	3,109	3,072	10,365	12,647	9,276	7,744	5,370	6,945	9,684	10,698	18,750
한국여성+외국남성	3,436	3,544	3,128	3,300	3,197	3,848	4,453	4,660	4,839	4,504	6,025
년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남성+외국여성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25,142	26,274	22,265	20,637	18,307	16,152
한국여성+외국남성	9,535	11,637	9,094	8,980	8,041	8,158	7,961	7,497	7,688	7,656	7,164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외국인과의 혼인’ 재구성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정책도 쏟아졌다. 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2006년 시범사업 21개소로 출발한 이후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었고, 2015년 8월 현재 전국적으로 217개소가 있다(다문화가족지원포털 <http://www.liveinkorea.kr>). 2006년에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로 출발한 24시간 이주여성 핫라인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주여성 폭력 피해 보호시설인 쉼터는 2004년 2개소에 정부 예산 지원이 시작된 이후 25개소로 늘어났다.

국가 차원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이주여성들이 폭력으로 살해당하는 일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무엇이 이주여성들을 폭력에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가? 여성들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과 방식의 지원이 마련되어야 하는가? 이주여성을 폭력에 취약하여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삶을 꾸려가는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상상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조사에서 주목한 지점은 이미 폭력피해를 경험하고 쉼터에 입소해 있는 이주여성들의 치유와 일상으로

의 복귀였다. 폭력피해라는 가장 극단적인 취약성을 경험한 여성들이 쉽터라는 제도 속에서 어떠한 가능성과 한계를 가지고 쉽터 이후의 삶을 기획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봄으로써, 이주여성들의 입과위먼트와 자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강조점을 찍고 살펴본 것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이었다.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해온 여성들이 퇴소 후의 삶을 스스로 기획하기 위해서는(그 형태가 귀가이든 이혼이든 간에) 심신을 치유하고 스스로 설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기르는 것과 함께 경제적 능력과 기반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경제생활과 자립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면서 참고할만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지만 이 분야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문화 봄’ 과 함께 이주여성에 대한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축적되었고, 폭력피해 등 이주여성의 인권 문제를 다룬 연구들(황정미, 2009; 김이선 외, 2010)도 진행되었지만,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자립, 특히 쉽터 입소 이주여성의 자립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나마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을 분석한 황정미(2009)의 연구에서 이주여성들의 자립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황정미(2009)는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문제 해결에 있어 안전한 이주를 보장하는 제도적 환경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이는 한국 상황을 잘 모르는 이주여성들이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고, 이러한 의존성을 빌미로 한 남편의 지배와 통제의 가능성이 이주여성의 발언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퇴소 후의 삶과 자립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었다.

한국 여성운동의 노력으로 일정한 제도적·사회적 성과를 거둔 선주민 가정폭력 영역에서는 폭력피해 여성의 자립에 대한 연구가 일부 있었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여성들의 자립자활 욕구와 자립 의지, 피해자 지원책, 피해자 보호시설의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이었다(류은주, 2009). 그런데 이주여성들은 선주민 여성들과는 이주라는 경험, 체류의 문제, 남편과 시집과의 관계, 원가족과의 관계, 언어 자원, 자신을 둘러싼 네트워크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주민 여성 대상 연구는 이

번 조사에서 참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모델이 될 수는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조사는 이주여성들이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라는 독특한 현장에서 자립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건 하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어떠한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초보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2014년에 실시한 결혼이주여성 노동 경험 조사의 연장선상에 있다. 2014년 조사는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아내, 어머니, 며느리로(만) 인식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실제 삶에서는 노동 시장에 진입한 노동자이기도 하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전반적인 노동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번 조사는 조사 대상을 쉼터에 입소해 있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들로 한정하여 사회경제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분투를 살펴보고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삶을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2. 조사 방법

이번 조사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쉼터에 있는 여성들을 심층면접하였다. 여성들의 구체적인 생활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면접을 통해 직접 그녀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심층면접은 2015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에서는 조사팀의 토론을 통해 공통으로 마련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본국에서의 삶, 쉼터 입소 전 생활, 쉼터 생활, 쉼터 퇴소 후 계획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동일한 심층면접 요약지를 작성하여 인터뷰에서 빠뜨린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고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 심층면접 질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사항 ○ 본국에서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전 노동경험 - 한국 생활 전망 ○ 쉼터 입소 전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경제 실태 - 본인의 경제 활동 및 자산 - 남편(가족의) 경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쉼터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 경제 활동 - 쉼터 생활 만족도 - 미래 준비에 있어 현재의 경제적 상황의 영향 ○ 쉼터 퇴소 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소 후 생활 - 자녀 양육
--	---

심층면접에서는 면접참여자의 한국어 구사 능력에 따라 서로 다른 언어가 사용되었다. 통역 없이 한국어로 인터뷰한 경우가 8명, 통역을 통해 인터뷰한 경우가 14명, 베트남어로 인터뷰한 경우가 5명이었다. 인터뷰 시간은 평균 1시간이었으며, 통역을 통해 인터뷰한 경우에는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기도 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면접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한 뒤, 이를 녹취록으로 전사하여 자료화하였다.

3. 조사 대상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자립에 대한 이번 실태조사는 조사 대상을 폭력 피해 이주여성쉼터에 입소 중인 이주여성으로 한정하였다. 왜냐하면 이들은 폭력을 경험한 이주여성들 가운데 자립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긴급하고 구체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전국의 5개 이주여성쉼터에 있는 이주여성들을 심층면접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여성들 가운데 인터뷰를 원하지 않거나 정신적·신체적 문제로 인해 인터뷰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총 27명을 면접하였다. 쉼터별 인원은 서울 5명, 대구 4명, 전남 5명, 전북 8명, 충북 5명이다.

전국의 정부 지원 이주여성쉼터는 2015년 기준 25개소이며, 평균 입소 인원은 동반 아동을 포함하여 300명에 달한다.

〈표 2〉 이주여성쉼터 현황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개수	18	18	18	22	25	25

*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표 3〉 이주여성쉼터 입·퇴소 현황

(단위: 년, 명)

구분	입소율	입소 정원	평균 보호 인원	연중 입소인원			연중 퇴소인원			현원		
				소계	피해자	동반 아동	소계	피해자	동반 아동	소계	피해자	동반 아동
2010	102	225	229	1,336	935	401	1,336	932	404	216	153	63
2011	105	221	232	1,142	761	381	1,146	773	373	212	141	71
2012	114	218	247	1,114	751	363	1,088	733	355	238	159	79
2013	107	260	277	1,254	819	435	1,278	844	434	265	169	96
2014	104	279	291	1,281	823	458	1,233	800	433	311	189	122

* 출처: 여성가족부(2015) ‘이주여성쉼터 입·퇴소 현황’

1) 인구학적·사회학적 특성

면접참여자 27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 5>와 같다.

<표 5> 면접참여자 일반적 특성

연번	출신국	연령	교육받은 기간	현재 비자	한국 거주기간	컴터 입소기간
1	베트남	34세	13년	F-6	4년 1개월	3개월
2	베트남	32세	12년	F-6	3개월	13일
3	베트남	27세	5년	F-6	3년 7개월	9개월
4	베트남	23세	10년	F-6	10개월	3개월
5	베트남	28세	12년	F-6	5년	1년 4개월
6	베트남	26세	12년	귀화	5년 1개월	1개월
7	베트남	27세	9년	F-6	8년	11개월
8	베트남	23세	11년	F-6	3년	1개월
9	베트남	25세	0년	F-6	2년 9개월	2년 6개월
10	베트남	29세	15년	F-6	6년 5개월	2개월
11	베트남	35세	9년	F-6	10년	2개월
12	베트남	22세	9년	F-6	2년 10개월	1개월
13	베트남	35세	2년	결혼비자*	10년	1년 3개월
14	베트남	34세	4년	F-6	2년 10개월	1일
15	베트남	23세	12년	F-6	1년 2개월	3개월
16	베트남	31세	7년	결혼비자*	7년 3개월	4개월
17	중국(한국계)	29세	14년	귀화	7년 0개월	3개월
18	중국(한국계)	39세	9년	F-6	4년 6개월	3개월
19	중국(한족)	44세	12년	F-6	2년 8개월	2년
20	캄보디아	27세	9년	F-6	8년 1개월	2년
21	캄보디아	26세	6년	귀화	8년 3개월	1년 1개월
22	캄보디아	33세	4년	F-6	2년 10개월	7개월
23	필리핀	25세	15년	F-6	4년 4개월	4개월
24	필리핀	43세	10년	귀화	12년 5개월	15일
25	우즈벡	31세	14년	F-6	3년 5개월	25일
26	일본	46세	16년	귀화	19년	5개월
27	라오스	24세	5년	F-6	3년 6개월	24일
평균		30.4세	9.5년		5년 6개월	7개월

* 결혼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F21(과거 ‘국민의 배우자’)인지, F6(‘결혼이민’)인지 모른 경우. ‘국민의 배우자’(F21 비자)였던 결혼이주민에 대한 비자는 2011년 ‘결혼이민’(F6비자)으로 변경되었다.

면접참여자의 출신국은 베트남이 27명 중 16명(5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캄보디아 3명, 중국 3명(한국계 중국인 2명, 한족 1명), 필리핀 2명,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일본, 라오스가 각각 1명이었다.

면접참여자의 출신국별 분포를 통해 컴퓨터에 입소해 있는 이주여성 중 베트남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시기뿐 아니라 평소에도 컴퓨터 입소 이주여성 중 베트남 이주여성의 비율이 높다. <표 7>에 나타난 것처럼 최근 5년간 전국 이주여성컴퓨터에 입소한 이주여성 가운데에서도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아 50%에 육박하고 있다.

<표 6> 면접참여자의 출신국 현황

(단위: 명, 괄호 안은 %)

구분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한국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일본	라오스	계
인원	16 (59.3)	3 (11.1)	3(2) (11.1)	2 (7.4)	1 (3.7)	1 (3.7)	1 (3.7)	27 (100)

<표 7> 2010-2014년 전국 이주여성컴퓨터 입소자 출신국 현황

(단위: 명, 괄호 안은 %)

구분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태국	러시아	기타	계
2010	408 (43.6)	225 (24.1)	123 (13.2)	69 (7.4)	25 (2.7)	32 (3.4)	10 (1.1)	9 (1.0)	34 (3.6)	935 (100)
2011	364 (47.8)	161 (21.2)	90 (11.8)	53 (7.0)	15 (2.0)	27 (3.6)	8 (1.1)	7 (0.9)	36 (4.7)	761 (100)
2012	354 (47.1)	142 (19.0)	84 (11.2)	67 (9.0)	29 (3.9)	23 (3.1)	4 (0.5)	5 (0.7)	43 (5.7)	751 (100)
2013	384 (46.9)	161 (20.0)	91 (11.1)	51 (6.2)	50 (6.1)	19 (2.3)	9 (1.1)	4 (0.5)	50 (6.1)	819 (100)
2014	384 (46.7)	141 (17.1)	120 (14.6)	55 (6.7)	35 (4.3)	18 (2.2)	11 (1.3)	7 (0.9)	52 (6.3)	823 (100)

*출처: 여성가족부(2015) ‘이주여성컴퓨터 입·퇴소 현황’ 재구성

이주여성컴퓨터에 베트남 이주여성들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다만 전체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국 분포를 고려하더라도 베트남 이주여성들

이 다른 국가 출신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력에 취약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다른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집계한 (가정) 폭력으로 살해당한 이주여성은 2014년까지 총 17명이었고, 이 중 베트남 여성이 11명이었다. 24시간 운영되는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인 다누리콜센터1577-1366의 2015년 1월-6월의 상담 통계를 보더라도 전체 54,930건의 상담 중 베트남이 21,529건(39.2%)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중국이 8,031건(14.6%), 필리핀 5,735건(10.4%), 캄보디아 4,624건(8.4%) 순이다 ([http://www. liveinkorea.kr](http://www.liveinkorea.kr)). 전체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으로 많은데, 상담 건수에서는 베트남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들의 상담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과연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들이 더 폭력이나 갈등에 취약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는데,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연구는 없으며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표 8> 결혼이주민(결혼이민비자, 혼인귀화) 주요 출신국 현황

(단위: 명)

순위	출신국	남	여	합계
1	중국(비한국계)	5,753	55,293	61,046
	중국(한국계)	9,381	49,336	58,717
2	베트남	604	57,041	57,645
3	필리핀	345	16,299	16,644
4	일본	1,425	11,814	13,239
5	캄보디아	18	6,352	6,370

*출처: 행정자치부, 『2015년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 결과(‘15.1.1. 기준)』에서 재구성

면접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30.4세였다. 20세 미만은 없었고, 20세-25세 7명, 26세-30세 8명, 31세-35세 8명, 36세-40세 1명, 40세 이상 3명으로, 20대 후반-30대 초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베트남 이주여성의 평균 연령은 28.4세로 전체 평균 연령보다 낮았다.

면접참여자들의 교육 수준은 낮은 편이었다. 교육수준을 조사한 것은 교육과 자립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여성들의 출신국의 교

육 제도가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교육 수준은 본국에서 교육받은 기간으로 환산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면접참여자들의 평균 교육받은 기간은 9.5년으로, 한국의 교육 제도를 기준으로 할 때 중학교 졸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교육받은 기간이 한국에서 대졸에 해당하는 16년은 일본 여성 1명뿐이었고, 고졸 이상인 12년 이상이 6명(대졸 포함), 고등학교 중퇴와 졸업인 9년 초과 12년 이하 8명, 중학교 중퇴와 졸업인 6년 초과 9년 이하 6명, 초등학교 중퇴와 졸업인 6년 이하 7명, 그리고 아예 제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도 1명 있었다.

<표 9> 교육 받은 기간

(평균: 9.5년)

교육 받은 기간	인원(명)	비율(%)
6년 이하	7	26.0
6년 초과 ~ 9년 이하	6	22.2
9년 초과 ~ 12년 이하	8	29.6
12년 초과 ~ 16년 이하	6	22.2
합 계	27	100

면접참여자들이 한국에 처음 오게 된 사유는 결혼이 26명으로 거의 대부분이었고, 취업을 위해 입국했던 경우가 1명 있었다. 혼인 유형을 보면 면접참여자 27명 중 25명이 초혼이었다. 면접참여자들은 대부분 자녀를 두었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가 23명, 없는 경우가 4명이었다. 쉼터 입소 전에 남편의 전혼 자녀를 양육한 경우 1명, 남편의 전혼 자녀와 자신과 남편 사이의 자녀를 양육한 경우 1명, 출신국에 자신의 전혼 자녀를 둔 경우도 2명 있었다.

<표 10> 면접 참여자 혼인 유형과 자녀 유무

혼인 유형	인원(명)	비율(%)	자녀 유무	인원(명)	비율(%)
초혼	25	92.6	있다	24	88.9
재혼	2	7.4	없다	3	11.1
합계	27	100	합계	27	100

면접참여자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한 기간은 평균 5년 6개월이었다. 거주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는 3개월이었고, 이를 포함하여 1년 미만인 경우가 3명, 3년 미만인 경우가 6명이었다. 10년 이상인 경우도 4명 있었다.

<표 11> 한국 거주 기간

(평균: 5년 6개월)

연번	거주기간	인원(명)	비율(%)
1	6개월 미만	1	3.7
2	6개월 이상~ 1년 미만	2	7.4
3	1년 이상 ~ 2년 미만	1	3.7
4	2년 이상 ~ 3년 미만	2	7.4
5	3년 이상 ~ 4년 미만	6	22.2
6	4년 이상 ~ 5년 미만	3	11.1
7	5년 이상 ~ 6년 미만	2	7.4
8	6년 이상 ~ 7년 미만	1	3.7
9	7년 이상 ~ 8년 미만	2	7.4
10	8년 이상 ~ 9년 미만	3	11.1
11	9년 이상 ~ 10년 미만	0	0
12	10년 이상	4	14.8
	합계	27	100

한국 거주 기간에 비하여 체류 자격은 안정적이지 않았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는 5명에 불과했고, 결혼비자를 소유한 경우가 22명(8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행 출입국 제도에서 결혼이주민은 F-6비자로 입국하며, 3년 이내의 체류 자격을 얻는다.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류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영주권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안정적인 체류권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결혼 기간이나 한국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매번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불안정한 체류 상태로 한국에 거주하게 되는 것이다. 영주권 취득이나 혼인에 의한 간이 귀화를 위한 체류 기간 조건은 한국 내 합법적이고 지속적인 체류 2년(외국에서 결혼생활을 한 경우는 결혼 후 3년, 그 기간 내 한국 체류 1년)이다. 귀화 신청 후 국적 심사 기간이 통상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최소 4년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2> 현재 체류 상태

구분	인원(명)	비율(%)
결혼비자	22	81.5
귀화	5	18.5
영주	0	0
합 계	27	100

면접참여자들의 쉼터 입소 기간은 평균 7개월이었으며, 갓 입소한 1일부터 2년 7개월까지 분포가 다양했다. 1개월 미만을 포함하여 쉼터 입소 6개월 미만이 18명(67%)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쉼터 입소 기간이 1차적으로 6개월인 것과 관련이 있다. 입소 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 3명, 1년 이상 2년 이하인 경우가 5명이었다. 2년을 초과한 경우가 1명 있었는데, 쉼터 입소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최대 2년까지 거주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²⁾

2) 이 사례는 만·형사 소송이 여러 차례 진행된 사례로, 면접을 진행한 2015년 7월 현재에도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표 13> 쉼터 입소 기간

입소 기간	인원(명)	비율(%)
1개월 미만	4	14.8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14	51.9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3	11.1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5	18.5
24개월 이상	1	3.7
합계	27	100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폭력 피해 이주 여성의 자립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면접참여자들의 출신국 및 한국에서의 노동 경험을 살펴보았다. 면접 참여자들은 대부분 한국에 입국하기 전 출신국에서 노동을 한 경험이 있었다. 가족을 도와 집안일 등의 무급노동을 한 경우를 포함하면 25명(92.6%)이 노동경험이 있었고, 노동 경험이 아예 없는 경우는 2명에 불과했다. 노동 경험이 없는 2사례는 학교를 마치고 바로 결혼이주한 사례들이었다

한국에 입국한 이후의 노동 경험 역시 비슷했다. 면접참여자 27명 중 22명(81.5%)이 유급 노동 경험이 있었고, 무급노동 경험은 2명, 노동 경험이 없는 경우는 2명이었다. 유급노동 중 2사례는 시어머니나 남편의 요구에 따라 시집에서 하는 일을 하고 용돈 수준의 돈을 받은 사례이다. 무급노동은 시집이나 남편이 하는 일을 같이 했으나 돈을 받지 못한 경우로, 착취적인 가족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 경험이 없는 2사례는 전업주부로 가족 내 재생산노동을 전담했다.

<표 14> 노동 경험 유무

(단위: 명, 괄호 안은 %)

구 분	유급노동경험 있음	무급노동경험 있음	노동경험 없음	합 계
출신국 노동경험	23 (85.2)	2 (7.4)	2 (7.4)	27 (100)
입국 후 노동경험	22 (81.5)	3 (11.1)	2 (7.4)	27 (100)

면접참여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수입을 제외한 전체 가족 경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남편의 소득을 비롯한 전체 가계 소득을 알고 있는 경우는 27명 중 7명(25.9%)에 불과했고, 75% 가까운 20명 가계 소득을 모르고 있었다. 이는 이주여성들이 가정 경제에 대한 자율권이 없이 가족 내 위치가 취약했음을 의미한다. 여성들의 가족 내 취약한 지위가 이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될 위험성을 높이고, 이로 인해 쉼터에 입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표 15> 가계 소득 인지 여부

구 분	인원(명)	비율(%)
안 다	7	25.9
모른다	20	74.1
합 계	27	100

2) 면접 참여 이주여성들의 노동 이력

면접참여자들의 출신국 및 한국에서의 노동 경험 이력은 다음과 같다.

사례 1은 2011년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년 간 보육 교사로 일했다. 그녀는 보육 교사를 하면서 3년제 대학에 들어갔지만 집안 사정으로 일 년 정도 밖에 다니지 못했다. 한국에 입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실직을 했고, 실직 후 쌀이 떨어져도 생활비를 주지 않아 집 근처에 살던 다른 베트남 여성의 소개로 옷 접는 공장에 취직해 일을 시작했다. 일해서 받은 급여는 주로 생활비로 사용했다. 쉼터에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 취업 준비는 하지 않고 있다.

사례 2는 2015년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본국에서는 가정 형편상 중학교 까지만 다닌 후 농사일, 전자제품 판매, 과일 배달, 휴대폰 판매 등 여러 가지 일을 하였다. 한국에 와보니 남편은 시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였는데 월급을 받아 온 적은 없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살림을 도맡아 하였고, 분가 후에는 시집에서 열흘에 10만원씩 받아서 생활했다. 집안에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자 같은 출신국 언니의 소개를 받아 식당일을 구했으나, “친정에 돈 보내려고 하는 거냐”며 시어머니가 반대하였다. 면접 당시 쉼터에 입소한지 채 2주도 되지 않은 시점 이어서 경제활동을 비롯한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었다.

사례 3은 2011년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본국에서는 부모님 농사일을 도왔을 뿐 직장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아본 경험은 없었다. 결혼 후 남편은 자녀 양육비나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여성은 수소문 끝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베트남 언니가 소개해 준 휴대폰 필름을 붙이는 부업을 하게 됐다. 그러나 남편은 그녀가 시부모를 돌보아야 한다며 2개월도 안돼서 외부 일을 못하게 막았다. 현재 쉼터에 입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심리정서안정 프로그램 참여하는데 집중하고 있지만, 면접 당시 곧 취업 교육 상담을 받으러 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쉼터 퇴소

후에는 한국에 와있는 친언니와 형부의 도움을 받아 일자리를 구하고 거처를 마련할 예정이다.

사례 4는 2014년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본국에서는 빵을 파는 일을 하다가 고향에 새로 생긴 대만계 신발 공장으로 일터를 변경한 후 미싱일을 했다. 월급에 만족해서 더 다니고 싶었지만, 결혼 서류를 만드느라 자주 공장을 빠지게 되었고 결국 그만두게 되었다. 한국에 와서는 돈을 버는 일을 해 본 경험이 전혀 없다.

사례 5는 2010년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본국에서 일한 경험은 없고, 한국에 와서도 횡집에서 네 시간씩 네 달간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외에는 취업 경험이 없다. 쉼터 입소 후 미용사 자격 과정을 수료했지만, 현재 필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미용실에서 수습 보조로 일하고 있다.

사례 6은 2010년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노동 경험은 따로 없었다. 입국 후 생활이 너무 궁핍해 무공장에서 6개월 동안 일을 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고 때로는 밤 9시까지 야근을 하는 날도 있어, 아이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급여가 낮더라도 노동시간이 더 규칙적인 자활사업단 일을 시작했다. 여기서는 열쇠고리와 핸드폰 고리, 인형이나 가방 등을 만들었다. 쉼터에서는 최근에 통닭집을 소개받았고 곧 일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적을 취득하여 체류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번 돈을 저축하며 퇴소 후 미래를 준비할 예정이다.

사례 7은 2007년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본국에서는 생선 회사에서 생선 다듬는 일을 했고, 한국 입국 직전에는 어머니의 장사를 도왔다. 한국에 온 후에는 지역 광고지에서 부업을 구하는 광고를 보고 하루 2000개의 안경을 조립하는 일을 했다. 쉼터 입소 후 쉼터에 사는 베트남 여성의 소개로 핸드폰 부품 공장에서 일하다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시간에 노동시간을 맞추기 위해 이불 공

장으로 옮겼고, 머리핀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사례 8은 2012년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본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후 사촌언니를 따라 구두 공장에서 일을 했다. 다시 고등학교에 입학하긴 했지만,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같은 구두 공장에서 일했다. 한국 입국 후 한국어 교실에서 만난 베트남 친구의 소개로 휴대폰 부품 공장에서 일했다. 쉼터 입소 이후에는 자녀의 어린이집 시간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현재 구직 중이다.

사례 9는 2012년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본국에서 어릴 때부터 설거지, 빨래, 가정부, 구두 공장 등 다양한 일을 했다. 입국 후 남편과 함께 재활용품을 줍고 파는 일을 했고 시부모가 경제권을 가지며 수입 관리를 했다. 성폭력 피해로 쉼터에 입소했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미싱 공장에서 보조 일을 하고 있다.

사례 10은 2009년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본국에서 광산기술대학교를 3학년까지 다니다 중퇴했고, 요리자격증이 있어 호텔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을 하다가 관광가이드를 2년 동안 했다. 입국 후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농사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남편한테 가정폭력을 당해 자녀를 데리고 별거를 시작했고 플라 스틱 공장에서 몇 개월 동안 일을 했다. 쉼터에서는 자녀 의료 지원을 받고 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사례 11은 2005년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본국에서는 가정 형편 상 중학교를 중퇴하고 대만 신발 공장, 농사일, 이모 식당에서 판매일을 했다.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집안일과 농사일만 하다가 오전에 계란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공장에서 돌아오면 농사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점심을 챙기고 농사일을 함께 했으며, 저녁에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계란 공장에서 받은 급여는 스스로 관리했다. 쉼터 입소 후에는 개인상담, 부부상담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경제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사례 12는 2012년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본국에서 어려운 가정형편상 형제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중학교를 중퇴하고 가족의 소개로 2년 동안 신발공장에서 일했다. 입국 후 빵 공장에서 20일 정도 일하다가 남편에게 밥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걱정이 들어 공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았다. 현재 컴퓨터에 입소한지 1개월 되었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자녀를 돌보면서 경제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사례 13은 2005년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본국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초등학교 2학년만 다니고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는 한편 이웃집 농사일을 해서 적은 수입을 받아 생활비에 보탬다. 입국 후 10년간 전업주부로 살았다. 컴퓨터 입소 후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컴퓨터에서 일자리를 소개받아 1년째 미싱 공장에서 보조를 하며 미싱 기술을 배우고 있다.

사례 14는 2012년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본국에서는 집안이 매우 가난하여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벽돌 제조, 가정부 등의 일을 하였다. 한국에 와서도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였으며 간간히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갔다. 양과 작업을 이틀 한 적이 있으며 이때 받은 돈은 시누이에게 갈취 당했다. 자신을 잘 대해주고 챙겨주는 이웃집에서 하는 토마토 농사를 도우면서 한두 차례 돈을 받기도 하였다. 그나마 돈을 번 것은 시아버지와 함께 낚시 바늘 손질을 하거나 남편과 함께 해초류를 채취해서였다. 면접 당시 컴퓨터에 입소한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사례 15는 2014년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본국에서는 보육교사 공부를 하다가 우체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우체국을 그만두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다가 결혼하여 한국에 왔다. 그녀는 입국 후 시집 농사일을 돕다가 한 달 만에 임신한 후 집안일을 하며 지냈다. 출산 후 집에서 내쫓기다시피 하였고, 이때 아는 언니 집에 기거하면서 식당일을 한 적이 있다. 계속 지낼 곳이 마땅치 않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 컴퓨터에 오게 되었으며, 현재 컴퓨터에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다. 소

송이 종료되면 공장에서 일을 하며 양육비를 벌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례 16은 2008년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본국에서는 미싱 기술을 배워 처음에는 집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대도시에 나가 공장에서 일을 하였다. 입국 전에는 고향에 돌아와 미싱일을 하면서 어머니 식당일을 도왔다. 한국에 온 후 남편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간간이 남편의 염전일을 돕거나 친척 소유 밭에 가서 일을 돕고 용돈을 받기도 하였다. 최근 남편의 허락을 받아 소금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다. 현재 쉼터에서 일을 하지는 않고 세 아이를 돌보며 지내고 있다.

사례 17은 2008년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본국에서 아르바이트로 관광 통역일을 했었다. 결혼 후 4년 동안은 아이를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았다. 이후 이중언어강사 과정을 수료하고 2년 정도 초등학교에서 이중언어강사로 일했다. 쉼터 입소 후 쉼터의 규정상 일을 하지 않고 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시장을 돌아다니며 유아용품을 판매하거나 한국 화장품 등을 중국에 판매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미래를 구상 중이다.

사례 18은 2010년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본국에서는 스스로 돈을 벌며 생활하기 위해 시골 고향을 떠나 도시에 갔으며, 백화점에서 TV와 의류 판매원으로 5-6년 동안 일을 했다. 입국 후 남편이 하는 이사짐센터에서 주방 포장 보조일을 했지만, 가정 형편이 넉넉해서 일을 계속 하지 않고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본국에서처럼 스스로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에 신문광고를 통해 주유소 일을 찾았다. 2개월 일했을 즈음에 남편이 심하게 반대해 주유소 일을 그만두었다. 쉼터에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 취업 준비를 하고 있지만, 쉼터 퇴소 후에는 먼저 퇴소한 친구가 일하는 전자공장에서 일하거나 그 일대에서 일자리를 찾을 계획이다.

사례 19는 2012년 여행으로 한국에 왔다가 결혼했다. 본국에서 전통의상공장 매니저로 12년간 일을 했지만, 전 남편과 이혼 후 한국에 와서는 가사일과 남편의

지체장애 아들을 돌보는 일을 도맡아 했다. 컴퓨터 입소 후 컴퓨터 선생님의 소개로 공장에서 포장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시급이 너무 낮아 퇴소 후에는 돈을 더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계획이다.

사례 20은 2007년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본국에서 가끔 부모님 농사를 돕는 것 외에는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 컴퓨터 입소 전에는 남편과 시집의 포도 농사를 도왔지만 수고비나 생활비를 받은 적은 없다. 그녀는 초등학교 선생님인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며 한국어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워 한국어 시험 3급을 통과했고, 잠시 다문화 강사일을 했다. 컴퓨터 입소 후 컴퓨터 선생님의 소개로 3개월 동안 미싱일을 했지만 자신과 맞지 않아 다른 일을 찾게 되었고, 현재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어 시험을 보고 번 돈은 적금을 드는 등 나중에 국적 취득할 때를 대비하고 있다.

사례 21은 2007년 한국에 입국하였다. 본국에서는 17세부터 부모의 빚을 갚기 위해 일을 시작했으며, 아침에는 미싱공장, 오후와 저녁에는 로션과 악세사리 가게에서 일했다. 입국 후 남편과 시집이 하는 과수원과 벼농사를 도왔지만 생활비와 양육비가 모자라 외부 일을 찾기 시작했다. 밭에서 같이 일하던 이웃 아주머니의 소개로 농협에서 사과 포장일을 3개월 정도 했고, 그만둔 후에는 이웃 베트남 여성의 소개로 잔디 뽑는 일을 3개월 정도 했다. 컴퓨터 입소 후 컴퓨터 선생님의 소개로 닭포장 일을 5-6개월 했지만 현재는 일을 쉬고 있다.

사례 22는 2012년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본국에서 중국 옷 공장에서 3년, 미용실에서 무자격으로 2년 동안 일을 했다. 입국 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무급으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했으며, 남편과 가족의 수입은 전혀 모르고 살림도 시어머니가 했다. 컴퓨터 입소 후 컴퓨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경제활동은 하고 있지 않다.

사례 23은 2011년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본국에서는 대학을 다니며 백

화점 판매일을 하다가 5개월만에 남편을 소개받고 결혼하였다. 입국 후 한국어 교육을 받으러 다닌 기관에서 진행한 영어지도사 양성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어린이집 영어강사, 학원강사, 개인 과외 등을 계속 해왔다. 남편과 치킨집을 하면서 학원강사 두 군데, 과외를 병행하기도 하였다. 입소 전에는 회사에 들어가서 파견 형태로 학원강사를 하였다. 쉼터에서는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소송이 끝나면 영어강사 자격을 이용하여 취업을 하고 자립할 예정이다.

사례 24는 2003년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본국에서는 고등학교 10학년 졸업 후 의류 공장과 백화점에서 잠시 일했다. 입국 후 남편이 소유한 배로 생선 잡이를 하며, 남편이 생선을 팔아 주는 용돈으로 생활했다. 바다에 나가지 않은 날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미역공장에서 일당을 받고 일했다. 쉼터에 쉼터 입소한지 15일 되었으며, 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남편의 일과 무관한 다른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싶어 한다.

사례 25는 2012년 H2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결혼 전에는 여행사, 무역회사 등에서 일하다가 결혼 후에는 남편의 강요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무능력한 남편으로 인해 임신 5개월째에 과수원에서 과일 수확일을 한 적이 있다. 쉼터에 입소한지 보름 남짓한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주중에는 병원 의료 코디네이터 일을, 주말에는 홀서빙을 하고 있었다. 병원일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알게 된 통역사 여성을 통해, 식당일은 직접 사설 직업소개 기관에 등록하여 구했다.

사례 26은 1996년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남편이 하는 현수막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시에서 운영하는 의료통번역 과정을 한 달간 수료하고 그 후 일본어 통역 일을 비정기적으로 했다. 그러나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아 시간이 날 때마다 한국 회사 제품을 일본 웹사이트에 이메일을 보내서 알리는 부업을 했고, 학원에서 일본어 강사로도 일했다. 이 일들이 모두 정기적인 수입이 되지 않아 고민하던 중 일본인 지인이 운영하는 교육 회사에 취업했다. 쉼터

입소 후 잠시 일을 그만 두었다가 다시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

사례 27은 2012년 한국에 입국하였다. 본국에서는 초등학교 졸업 후 노점에서 음식을 판매했고, 그 후 시장에서 속옷 판매를 하며 돈을 조금 벌 기회가 있었다. 입국 후에는 남편이 아이 양육과 가사에만 집중하라고 하여 외부 일은 하지 못했다. 가끔 시어머니 소유의 조경 농장이 바쁠 때 일을 하고 용돈조로 돈을 받기도 했지만, 이 돈은 대부분 생계비로 사용했다. 쉼터에 입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는 취업하기 어렵지만 나중에라도 일을 찾으려고 한다. 돈을 벌어서는 본국에 있는 어린 동생들을 교육시키고 부모님을 돕고자 한다.

II. 한국에서의 가족생활

결혼중개 시장에 의해 주도되는 한국사회의 국제결혼은 표면적으로는 ‘결혼’의 형식을 취하지만 중개 과정 자체가 ‘매매혼’이나 ‘인신매매’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은 상업적 중개 결혼이 본격화된 십여 년 전부터 비판의 대상이었다(김현미 외, 2007). 결혼중개 방식이 대부분 비용 전액을 지불하는 남성의 이해와 욕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최대 이윤의 추구라는 시장 논리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결혼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권 유린을 경험하기 쉽다.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해 2008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왔지만, 여전히 이러한 방식의 결혼중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개 과정 자체에 내재된 젠더 불평등은 이후 가족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착취와 극단적인 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 여성들이 가부장적 가족 내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통제나 억압, 폭력, 학대, 착취 문제와 극단적으로는 여성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가정폭력 사건은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면접참여자들은 대부분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려 왔으며 쉼터 입소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여성들도 여럿 있었다. 가족 관계 속에서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을수록 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 장에서는 여성들을 쉼터 입소로 이끈 폭력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그녀들이 억압적인 가족 관계 안에 놓여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여 여성들이 경험한 가족관계가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족재생산을 위한 도구화

1) ‘문제 있는’ 아들의 뒷바라지

그동안 중개업을 통한 국제결혼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 것은 정신장애, 알코올중독 등으로 인해 결혼생활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한국

남성이 이 사실을 감춘 채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허위 정보 제공을 통해 이루어진 결혼은 출발부터 관계의 불안정성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이주여성의 죽음으로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는 경우도 여러 차례 발생해왔다. 이를 방증하듯 이번 조사에서도 한국 남성이 정신장애나 알코올 중독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15사례에 달했다. 여기에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8사례, 알코올 중독 3사례, 그리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선상에 있는 4사례가 포함된다.³⁾

면 : 그러면, 남편분이 집에 와서 하는 일이 뭐였나요?

응(통) : 원래 저희 집이 좀 작아요. 문을 열면 바로 주방이 보여요. 보통 남편은 문을 열고나서, 집에 들어오면 옷을 다 벗어요. 벗고 나서 안방에 가서, 그냥 잠옷이나 평상시에 집에서 입는 옷으로 갈아입고, 옷을 다 입은 다음에는 TV를 보거나 아니면 자요. 그리고 제가 뭘 물어봐도 대답해주지 않아요. TV를 보면서 중얼거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TV를 안 틀었는데도 혼자서 중얼거리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벽을 쳐다보고, 그냥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는 듯으로, 하는 행동이 보여요.

면 : 그러면 ○○씨랑 같이 뭘 하는 거는 밥을 차려주면 밥을 먹고, 그거 외에는 뭐가 없는 거네요. 집에 와서.

응(통) : 원래 저를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끼니가 되면 그냥 밥 먹으라고 하면 오고, 아침에 밥 먹으라고 했을 때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냥 방에서 중얼거리기만 해요. 그런 때도 있어요. (사례 2, 베트남, 통역을 통해 인터뷰)

이러한 한국인 남편들 가운데에는 독립적으로 가족생활과 생계를 유지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에 달했다. 또한 앞서 언급한 15사례 중 8사례에서 남성은 시집이 경영하는 사업, 즉 같이 농사를 짓거나 시부모 소유의 인쇄소, 고물상, 염전 등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 남성들은 사업을 경영하지도 혹은 일정한 소득을 받지도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 시어머니가 소득과 생계를 관리

3) 또한 여성 역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례가 3건 있었으며, 남성이 아니라 남성의 전혼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례도 1건 있었다. 자녀가 지적 장애를 안고 있던 사례 19 (중국)의 경우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다시 집에 데려오는 것이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였는데, 남편이 교통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학교가 끝날 때까지 복도에 앉아 기다리느라 많은 시간이 소모되었다.

하고 통제하였다.

남성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시집 소유의 농지나 식당 등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의존하거나 시부모와 같이 살 때는 물론 분가를 하고 나서도 시어머니가 소득을 관리하는 경우가 6사례에 달했다. 사례 15(베트남)의 경우 남편은 시어머니 소유의 농지에서 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소득을 관리하였고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만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 사례 22(캄보디아)의 남편은 시어머니의 식당에서 따로 월급을 받지 않고 일을 했으며, 분가해서 살고 있지만 시어머니가 모든 살림을 관리하고 식사도 식당에서 해결하였다.

응(통) : 식당 장사할 때는 시어머니 같이 장사하는데, 생활하는 것은 본인하고 남편하고 같이 따로 살고 있었어요.

면 : 그러면 남편 집에 생활비는 어떻게 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월급을 줬나요?

응(통) : 아니요 안 줬어요. 식사할 때 식당에서 먹어요. 남편은 돈이 없어서 뭘 사고 싶을 때 시어머니한테 말을 하면 시어머니는 사 줘요.

면 : 그러면 집은, 남편이랑 같이 살았던 집은 시어머니의 집이었어요? 아니면 월세했어요? 전세했어요?

응(통) : 시어머니가 월세해 줬어요.

면 : 그러면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월급을 얼마 받았는지 그거 모르시네요.

응(통) : 시어머니가 안 줬을 걸요 (사례 22, 캄보디아, 통역을 통해 인터뷰)

남성이 경제적으로 무능하여 시부모에게 의존적인 경우도 있었다. 사례 23(필리핀)은 남성이 이전 결혼에서 돈 때문에 자주 아내와 싸워서 이제 본인 소득은 본인이 알아서 관리한다고 하였지만, 그는 꾸준히 일을 하여 일정한 소득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안경원, 국제결혼 중개, 치킨집, 배달, 호텔 청소, 공장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여 소득이 불규칙적이었고, 결국 살림을 관리하는 것은 시어머니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시어머니로부터 소량의 돈을 구걸하듯 받아쓰는 생활을 하고, 의사결정권 없이 가사노동과 가구노동을 강요당하며 그전까지는 한국인 가족들이 담당하던 ‘문제 있는’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역할을 하였다.

면 : 시택에서 한 달에 용돈을 30만원을 주신다고 했고, 그러면은 남편이 버는 돈은 없었던 거예요?

응(통) : 남편이 버는 돈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댁이 다 관리하고, 열흘 정도에 10만원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요. 돈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모르고 남편이 버는 돈.

(중략)

응(통) : 원래는 저는 3월 10일에 한국에 와서, 4월 1일에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첫날에는 돈이 없어서 그냥 와서 시부모님한테 음료수값 돈을 조금 달라고 하는데, 그때는 1,600원을 시아버님이 줬어요. 그리고 다음날에 너무 적어서 시어머님은 만원을 주고, 네, 그랬어요. 근데 다음번에는 그렇게 달라고 하지 않고 시어머님이 그냥 주면 받는 걸로 했어요. (사례 2, 베트남, 통역을 통해 인터뷰)

시집이 아닌, 남편이 일하는 주유소 사장(사례 5, 베트남), 그리고 옆집 할아버지 부부(사례 13, 베트남)가 남편의 소득을 관리하고 생활을 통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앞서 언급한 시어머니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였으며, 한국인 남편은 용돈을 타듯이 생활비를 받아 사용했다. 사례 5(베트남)는 남편이 일하는 주유소 사장이 남편의 소득을 관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한 달에 30만원 받아오는 돈으로 겨우겨우 생활을 하였다. 답답하게 3년을 지낸 후 주유소에서 벗어나 시집 근처로 이사를 갔지만 이번에는 시이모가 소득을 관리하였다.

면 : 주유소 다녔어요, 남편이?

응 : 네네. 사장님 사모님이 돈 다 관리해요. 그 남편의 통장.

면 : 남편의 통장도?

응 : 거기 주유소 오래 다녔어요. 십 년, 십 년 다녔는데 사장님이 다 관리해요. 남편 아무것도 몰라요. 머리 뭐가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면 : 부족했던 거 같아요?

응 : 네. 왜냐면 우리 꺼 내 꺼 내가 관리해야지 왜 다른 사람이 관리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면 : 그렇죠.

응 : 답답해 죽겠어요. 그냥 답답하지만 참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한국에 금방 왔잖아요. 돈 달라고 돈 때문에도 안 되죠. 그냥. 쫓. 힘들게 살았어요. 생활비 한 달에 삼십만 원 주고.

면 : 누가 줬어요? 그것도 주유소 사장님이?

응 : 네. 사장님이 주는 거예요. 통장을 다 갖고 있어요. 남편이 한 달에 백오십만 원 돈 벌어요. 작아요. 근데 그 때 우리 집 거기 집에 원룸 살아 전세 살았어요. 근데

한 달에 삼십만 원 주는 거예요 임신 했을 때 먹고 싶어도 못 먹어 뭐가 옷도 점점 배가 커잖아요, 근데 옷 입고 싶어도 못 입었어요 핸드폰 요금도 내나 관리비도 내나 그럼 이 돈이 삼십만 원 얼마나 남은 거 없잖아요 (사례 5, 베트남, 한국어로 인터뷰)

2) 혈통 유지를 위한 도구화

여성들은 가족 안에서 ‘문제 있는’ 아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떠맡는 경우가 많았지만, 동시에 하루 빨리 자녀를 낳아 시집의 대를 잇도록 강요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에 입국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한국말도 하지 못하고 한국 생활에 적응할 기회도 갖지 못한 여성에게 시어머니는 인공임신을 강요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혼시키겠다고 하였으며(사례 2, 베트남), 출산 후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남편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시어머니와 산후 조리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은 여성은 쫓기듯 집에서 나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집으로부터 이혼을 통보받았다(사례 15, 베트남). 여성은 가족 안에서 어머니로서의 지위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으며, 단지 출산의 도구로 간주된 채 그 역할을 거부하거나 그 역할을 완수한 이후 남편과 시집으로부터 버림받는 경험을 하였다.

응(통) : 2주 전에 시댁은 병원에 가서 인공임신하라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국말도 모르고 어떻게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 한국에 오니까 남편이 약간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서 시부모님한테 말했어요 시부모님이 그냥 괜찮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약간 이상한 행동도 보여주는데 시부모님도 괜찮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일주일 전에 남편의 인공 임신하라는 그런 것을 빼러 병원에 갔었어요 ... 그때 저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밥도 못 먹고 몸도 안 좋으니까 힘들었는데 시부모님은 3개월 뒤에 인공 임신해야 된다고 했어요 만약에 안 하면 이혼시키겠다는 얘기도 나왔고 ... 시부모님은 그냥 손자를 구하고 싶어서 아들한테 결혼시켰는데 저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 저는 만약에 현재 상황을 풀린다면 남편하고 같이 안 살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도 못 가지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저는 인공 임신으로

하면 혹시 남편이 비슷한 예를 낳을까 봐 걱정해서. 그리고 시동생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더 걱정해서. (사례 2, 베트남, 통역을 통해 인터뷰)

2. 사회적 고립

남성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들이 가족 바깥에서 한국 사회와 관계 맺고자 시도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이는 주로 바깥출입을 금지하거나 한국어를 배우지 못하게 하거나 유급 노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이 이렇게 여성들을 통제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였는데, 하나는 같은 출신국 사람을 만나 도망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사노동과 가구에 여성들을 묶어놓기 위한 방책이었다. 남성들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아내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고립시키는 방식을 택하였다.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외출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남성들은 여성들이 집 밖에서 같은 출신국 사람들을 만나기라고 하면 한국 사회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고 도망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사례 4(베트남)는 “남편이 친구들을 만나면 안 좋다고 친구를 사귀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매일 집에서 갇혀 살았고,” 사례 20(캄보디아)은 집 안에 고립된 채 한국에 거주한 지 8년이 지났는데도 자신이 사는 동네를 잘 모르고 버스를 탈 줄도 몰랐다. 남편이 도망갈 것을 염려하며 한국 거주 8년이 지나도록 국적 신청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사례 16, 베트남)

면 : 그럼 동생(응답자)은 한국에 와서 남편이 용돈도 안주고, 친구도 만나지 못하게 걱정을 없었어요?

응 : 그것도 걱정이 있었어요. 용돈은 주고 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 줘도 돼요. 하지만 친구를 만나는 것이 개인의 생활이고 결혼하면 친구를 못 만나는 것 아니에요. 사회에서 친구도 만나고 배우는 것은 있으면 배우고 제 남편이 이해해주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베트남 사람에 대한 콤플렉스를 있었어요. 남편은 베트남과 같이 다니면 아내가 도망갈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외출 못하는 것은 너무 했어요. (사례 11, 베트남, 베트남어로 인터뷰)

한국어를 배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남편과 시집이 직접 한국어 교실을 알아보고 한국어 공부를 권유한 사례도 있었지만 상당수의 가족들은 여성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남성들은 여성이 한국어 교육을 받으러 센터에 가는 것을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주여성들을 만나 ‘나쁘게 되고’ 집에서 도망가는 계기를 접하는 것으로 보았다. 선생님을 따라 갈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어방문교육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달리 여성을 생계별로 내몰며 한국어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례 1(베트남)은 한국어 교육을 신청해서 1년 정도 공부를 해왔지만 남편의 실직과 함께 본인이 가게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한국어 공부는 포기하고 3년 동안 혼자서 뒷바라지는 다한 후, 이제는 일을 그만두고 한국어 공부를 하겠다고 하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안 된다. 계속 일해야 한다. 경제는 네가 책임져야 한다”며 완강히 반대했다.

응 : 한국어 공부도 못 갔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러 간다고 했더니 남편이 제가 한국어를 배우러 간 적을 하고 베트남 사람들을 만나 나빠진다고 했어요.

면 : 응. 다른 몇몇 남편들도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응 : 심지어 한국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못 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를 배우러 못 가게 하면 선생님이 집으로 올 수 있도록 신청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반대했어요. 선생님이 집에 와서 가르치면 나중에 제가 선생님을 따라갈 거라고 했어요. 그 선생님의 집에 가서 살아라하며 집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사례 12, 베트남, 베트남어로 인터뷰)

여성들에게 가사노동과 가구노동에만 전념할 것을 강요하며 유급 노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10사례에 달했다. 남편과 시집으로부터 거의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적은 돈이나마 직접 벌어서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에 보태려고 하였지만, 남편과 시집은 “왜 너는 집안일도 많이 굳이 밖에 나가 일하려고 하느냐” (사례 21, 캄보디아)며 반대하였다. 가사노동의 범위는 여성의 가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부모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다(사례 3, 베트남). 여성이 유급 노동을 하겠다고 하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것으로 의심하기도 하였다.

사례 13(베트남)의 경우 옆집 할아버지가 소득을 관리하고 남편은 생활비를 타서 쓰는 형편이었는데, 남편은 늘 일은 하는데 버는 돈은 없다고 하였다. 이에 여성이 직접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여성이 일할까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도 않았고, “돈을 벌러 한국에 왔냐. 베트남에 남편과 아이라도 있느냐”며 여성의 의도를 의심했다. 그렇다고 하여 가사노동과 가구노동을 하면서 경제권을 갖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여성들은 말 그대로 ‘노동’만 하였다.

면 :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응 : 일한 이유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고 가족들은 내가 나가는 줄도 모르고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관심이 없었고, 애기 옷이나 장난감을 사주고 싶었는데 돈도 없고 그래서 애기 옷이라도 사주고 내가 용돈이 없으니 돈이라도 있었으면 해서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중략)

면 : 그러면 전혀 가지고 있었던 돈은 없었어요?

응 : 예 별로 없었어요.

면 : 돈이 필요하면 누구에게 얘기하세요?

응 : 시어머니에게 얘길 했는데 시어머니는 너는 어떻게 돈을 짹짹 쓰냐 하시면서 그러길래 그 다음부터는 돈을 달라는 얘길 안했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면 : 이 일을 시작하니 가족들 반응은 어땠어요?

응 : 왜 너는 집안일도 많은데 굳이 밖에서 나가 일하려고 하느냐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사례 21, 캄보디아, 통역을 통해 인터뷰)

직접적으로 여성을 데리고 온 이유가 가구노동을 시키기 위해서임을 강조하면서 한국사회와의 접촉을 막기도 하였다. 사례 20(캄보디아)의 경우 가족들은 “내가 돈 주고 너를 데려왔는데 공부하라고 데려왔냐, 밭에서 일하라고 데려왔지”라고 하면서 한국어 공부와 유급 노동을 하지 못하게 막았고 “너는 빈손으로 왔잖아. 네 것은 없어.”라며 가구노동에 대한 보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여성이 돈 벌고 싶으면 나가서 직접 벌라고 하면서도 누가 외국인일 쓰겠냐며 비아냥거렸다. 여성들이 가구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부부가 함께 일한 사례 22(캄보디아, 통역을 통해 인터뷰)의 경우 저축을 하겠다고 한 달에 10만원이라도 달라고 하였지만 시어머니는 거절하

었다. 경제적 보상을 한다 하여도 용돈 식으로 소액의 돈을 주는 것으로 그쳤다. 경제적 보상까지는 아닐지라도 심리적 보상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여성들도 있었다. 사례 11(베트남)은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담하다시피 하며 낮에는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평소 5~10명, 수확 시기에는 30~40명)의 새참을 준비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누가 집안일과 농사일을 하겠느냐고 하며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녀가 열심히 집안일과 농사일을 하여도 그녀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돈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여성이 농사일을 돕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했고, 농사일을 하지 않으면 또 하지 않는다고 구박하였다.

응 : 돈을 안 줬고 아이 우유가 떨어졌는데 말하면 돈이 없고 살 돈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다면 저에게 일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돈을 벌게끔. 일을 못하게 하고 제가 일하면 누가 집안일을 하겠느냐고 했어요. 집안일과 논농사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요.

(중략)

면 : 근데 아까 응 씨가 수확하면 상당한 돈을 벌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응 : 근데 돈 한 푼도 안 줬거든요.

면 : 그럼 그 문제에 불만이세요?

응 : 음, 불만은 안 하는데요.

면 : 그냥 버는 돈은

응 : 남편은, 저는 돈을 이렇게 벌어서 생활비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몰라주고 저를 아껴 주지 않거든요. 이해해 주지 않아서요.

면 : 아침부터 바쁘게 나가고 집에 와서 집안일을 해야 하고

응 : 그렇게 집안일을 하는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관심을 가져 주지 않아서요.

(사례 11, 베트남, 베트남어로 인터뷰)

남성이 가부장적 태도를 보이며 여성이 일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례 25(우즈벡)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경제적 능력이 좋았음에도 남편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여성은 자신의 월급이 더 높아 남편이 ‘자격지심’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3. 동등한 가족구성원 지위 불인정

결혼 생활에서 가족의 경제권 운영에 있어 시부모의 관리와 통제에서 벗어나 남편과 여성이 소득을 관리하고 살림을 하는 경우는 12사례였다. 이 가운데 7사례는 남편이 소득을 관리하였으며, 5사례는 여성이 관리하였다. 남편이 소득을 관리하는 경우 여성들은 마치 아이들이 용돈을 타는 것처럼 생활하였다. 여성들은 생계를 꾸려가는 데 있어 남편과 동등한 지위를 갖지 못했으며, 의사결정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남성들이 가구 소득을 관리하는 경우 남성들은 직접 장을 봐오거나 여성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항상 동행하거나 최소한의 비용만 주었다. 사례 3(베트남)은 생활비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자녀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 데에도 수차례 남편에게 부탁을 해야만 했다. 사례 26(일본)은 한국에 20년 가까이 거주하였는데도 남편으로부터 필요할 때마다 1만원, 2만원씩 받아 생활하였다. 사례 19(중국(한족))의 경우 옷이나 화장품, 심지어 칫솔, 치약까지 본국에서 가져온 것을 가지고 생활하였으며, 생리대 살 돈을 겨우 얻어 사왔는데, 남편은 비싼 것을 사고 미리 말하지 않은 우유도 샀다며 여성을 폭행하였다. 그나마 생활비 30만원을 받아서 쓰는 경우에도 남편과 시집은 사온 물건 하나하나마다 트집을 잡고 구박을 하였다(사례 4, 베트남).

응(통) : 생리 왔을 때 생리대를 사야 해서 돈을 달라 해서 만원을 줬어요. 근데 만원을 줘서 7천원을 주고 생리대를 샀고 그 다음에는 돈이 남아서 우유 한 통을 샀어요. 근데 갔다 오고 나니까 남편이 돈을 함부로 썼다고 몇 대 때렸어요.

면 : 우유를 하나 더 샀다고?

응(통) : 2500-700원을 추가적으로 더 썼다고. 그니까 생리대가 목적이었잖아요, 그 외의 돈을 썼다고.

응 : (중국어) 돈 줘 돈 줘.

응(통) : 그니까, 누가 너 이 우유 사라고 했냐. 내가 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돈을 내놔라. 우유 샀다고 우유,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이제 화가 나서 이렇게, 등을 때렸어요.

응 : (중국어) 비싸요 비싸요 비싸요

응(통) : 생리대를 보고 7000원이나 비싸다고 해서 던져 버렸어요. 비싸다고 하면서.

(사례 19, 중국(한족), 통역을 통해 인터뷰)

여성이 가구 소득을 관리한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살림을 했다고보다는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였다.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남편이 진 빚을 갚고 남편이 달라고 하는 만큼 용돈을 주고 나면 정작 생활비는 거의 남지 않았다. 여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굶거나 밥과 계란, 간장을 비벼 먹는 생활을 하였고(사례 14, 베트남), 자신의 신용카드나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을 하여 본인 명의의 빚을 지고 있었다(사례 17, 중국(조선족); 사례 25, 우즈벡).

응 : 그래서 월세 내고, 보험 내고, 남편 빚 그거 내고, 그리고 (한숨) 공과금 내고 전화 내고 남으면, 160 벌면 벌 때는, 5만 원, 6만 원 남아요. 그러면 담뱃값 나가고, (허탈하게 웃음) 남편 담뱃값 나가고 그래서 5만 원 남는데, 5만 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생활을 해요 (다시 허탈하게 웃음) ...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제가 가족들 중에 유일하게 신용카드가 있는 사람이라 신용카드를 긁는 거죠. 그래서 맨날 마이너스로 살았어요 (사례 25, 우즈벡, 한국어로 인터뷰)

이주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한국에 왔지만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였다. 한국인 남편들은 독립적인 가구를 유지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결혼 후에도 시집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이주여성들 역시 시집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고, 권리 없는 가사노동과 가구노동을 강요받았다.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한국인 남편들은 이주여성들에게 동등한 의사결정권과 경제권을 주지 않았다. 남편과 시집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주여성들을 한국사회로부터 고립시켰고, 이 상황에서 발언권을 갖지 못한 여성들은 폭력에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Ⅲ. 경제활동을 위한 자원과 한계

1. 기존 노동 경험

쉽터에 입소한 이주 여성들의 취업 경험은 크게 출신국에서의 임금 노동, 무급/유급 가족 (재)생산 노동, 한국 입국 후 쉽터 입소 전까지의 임금 노동 및 무급/유급 가족 (재)생산 노동, 쉽터 입소 후 임금 노동으로 나눌 수 있다. 쉽터 입소 여성 27명 중 출신국에서 노동을 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25명으로 전체 여성의 92%가 유/무급 노동의 경험이 있었고, 그 중 23명이 유급 노동 경험이 있었다. 한국 입국 후 쉽터 입소 전까지 노동 경험이 있는 여성은 24명으로 전체 여성 중 89% 여성이 노동 경험이 있었고, 입소 후 노동 경험이 있는 여성은 22명으로 81% 여성이 노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장에서는 출신국 및 한국에서의 무/유급 노동 모두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노동 경험이 폭력 피해 여성들의 쉽터 입소 이후 경제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1) 출신국에서의 노동 경험

쉽터 입소 이주여성들이 출신국에서 경험한 노동은 주로 시장에서 과일 배달, 빵 판매, 의류 판매 등과 같은 저임금의 임시직 서비스 노동이나 대만 등의 외국계 생산 공장에서의 단순 노동, 또는 농사나 행상 등과 같은 가족노동이었다. 전통 의상을 만드는 공장의 매니저(사례 19, 중국), 보육 교사 (사례 1, 베트남), 무역회사 직원(사례 26, 일본), 관광 가이드(사례 17, 중국), 요리사 (사례 10, 베트남) 등의 전문직 노동의 경험이 있는 여성들도 있었지만, 이 다섯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신국에서 저숙련 노동에 종사했다. 그런데 저숙련 노동의 특성상 이 여성들의 출신국에서의 노동 경험은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출신국에서 전문직을 가졌던 여성들일지라도 한국에서는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 경력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14).

사례 5(베트남)는 베트남에서 신발 공장에서 미싱일을 배우긴 했지만, 신발을

만드는 전체 과정 중 일부분만 배웠기 때문에 실제 그 기술이 한국에서 취직할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면 : 응. 베트남에서 신발을 만드는 미싱일을 했잖아요. 그 기술로 한국에서 일을 구할 수 있어요?

응 : 베트남에서 대만 회사에서 일을 했지만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각각 다른 단계를 맡아서 일을 해요. 제가 미싱을 할 줄 알지만 공장에서 주어지는 한 단계의 일을 하면 그 부분의 일만 할 줄 알게 되어요. (사례 5, 베트남, 통역을 통한 인터뷰)

출신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대다수의 여성들 자신의 수입을 친정 부모나 형제 자매들에게 대부분 그냥 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수입을 스스로 관리해 본 경험이 많지 않았다. 특히 가족이 하는 농사나 장사를 도왔던 경우에는 특별히 임금을 받았다고 보다는 그냥 도와준다는 개념이 강했다. 사례 21(캄보디아)은 할머니 댁에서 지내다가 고모가 빚을 저 온 가족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17세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전에는 미싱 공장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로션 공장, 약세서리 공장에서 일하면서 번 돈의 2/3는 어머니에게 보내고, 나머지 1/3로는 꼭 필요한 생활비로 사용했다.

출신국에서의 노동 경험이 수입의 소유 관념과 경제적 자립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가지게 해 준 사례도 있었다. 사례 2(베트남)는 중학교 졸업 이후 한국에 오기 전까지, 출신국 중소 도시에서 전자제품 판매, 건축 보조, 시장에서 과일 배달 등과 같은 다양한 일을 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수입을 자신만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버는 돈의 대다수를 부모님께 보냈다. 하지만 출신국에서 노동을 통해 돈을 벌어진 경험은 수입 관리에 대한 주체적 생각을 가지게 해 주었고, 그러한 생각은 부부 관계 내에서도 각자의 소득은 각자가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응 : 저희 생각에는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다. 남편의 돈은 남편의 돈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는 자립 자립으로, 네-, 살아왔으니까 그냥

면 : 당연하다는, 그런 건가요? 내가 돈을 벌고 사는 게

응 : 네-, 당연한 거죠. (사례 2, 베트남, 통역을 통한 인터뷰).

2) 쉼터 입소 전의 노동 경험

이주여성들이 한국 입국 후 쉼터 입소 전까지 경험하는 노동은 출신국에서의 노동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부 여성들(중국 2명, 일본 1명, 캄보디아 1명)이 소위 ‘다문화 일자리’로 불리는 다문화강사, 이중언어강사, 통번역사 등의 직업에 종사했지만, 이러한 일자리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임시직인 경우가 많아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런 일을 한 여성들의 수도 적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2014년 발간한 <결혼이주여성 노동경험 분석: 노동의 경합 양상을 중심으로>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부 주도의 다문화 사업으로 마련된 통번역사, 이중언어강사, 다문화강사 등과 같은 직업은 정규직 채용이 적고 고용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례 26(일본)은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의료관광 통역 과정을 수료한 후 의료관광통역 일을 했는데, 그 일로는 생계를 꾸리기에 부족했다. 기본 3시간까지는 5만원, 추가 시간당 2만원이라는 임금 산정 방식은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보면 높은 편이었지만, 정기적으로 일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수입을 예측하기 어렵고, 갑자기 일을 하는 경우가 잦아 다른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결국 일을 그만두었다.

일부 ‘다문화 일자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면접참여자들은 한국에 와서도 출신국에서 했던 일과 유사한 노동 영역에 종사했다. 대부분의 ‘다문화 일자리’들이 고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면접참여자들의 교육받은 기간은 평균 9.5년으로 한국 교육 제도를 기준으로 할 때 중졸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다수의 여성이 저숙련 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조건 속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출신국과 한국에서 유사한 노동 영역에 종사한다는 점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14년 보고서에서 결혼 후 이주여성들이 노동경력 단절을 경험하며 결혼 후 노동 직종이 달라진다고 분석한 것과는 다른 결과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쉼터 입소 이주여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베트남 여성(59%)을 별도로 분리하여 보면, 대부분 부업이나 공장노동에 종사하고 있어 출신국과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 업종이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2014년 보고서에서도 베트남 여성의

경우 본국의 종사 직종에 대한 다중응답에서 공장(생산직, 50%)과 서비스업(41.7%)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결혼으로 인해 노동 경험 자체가 단기/장기적으로 단절되긴 했지만, 쉼터에 거주하는 이주여성 대다수는 한국에 입국 후 핸드폰 공장, 머리핀 공장, 이불 공장 등과 같은 저임금 생산 공장에서 일하거나, 핸드폰 필름 붙이거나 안경 조립과 같이 낮 시간에 할 수 있는 저숙련 부업 노동에 종사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특징적인 것은 면접참여자 27명 중 9명(33%)에 달하는 여성들이 시집 가족과 함께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거나 시집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나 식당 등에서 무/유급 서비스 노동을 했다는 점이다. 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시집 가족노동에 종사한 여성들은 남편과 시집의 권력 관계에서 보다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여성들의 경우 한국 입국 후의 노동 경험이 가족 외부가 아닌 가족 관계의 연속성 상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가족노동의 경우 제대로 된 임금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일하는 농장에서 일하고, 일당이 아닌 용돈의 개념으로 일정 정도의 돈을 비정기적으로 받거나 (사례 27, 라오스), 일당을 받기는 했지만 시집 식구에게 빼앗기는 등 (사례 14, 베트남), 대다수 가족노동의 경우 노동의 댓가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사례 14(베트남)는 한국 입국 후 시아버지와 비정기적으로 낚시 바늘 손질, 미역 채취 등의 일을 하거나 이웃집의 토마토나 양파를 수확하는 일을 했다. 그러나 그렇게 일해서 번 돈은 시누이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가져갔고, 시아버지로부터 수고비로 받아 시아버지 통장에 입금해둔 돈 역시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 시누이가 빼앗아가는 등 실제 자신이 일을 해서 번 돈을 대부분 받지 못했다. 노동 경험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노동의 대가는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입국 후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을 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쉼터 이후의 삶을 기획하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비록 무급의 가족노동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던 사례도 있었다. 사례 22(캄보디아)는 한국 입국 후 시어머니가 일하는 식당에서 전혀 월급을 받지 못하고 일을 했다. 심지어 그녀가 저축을 하고 싶다면 한 달에 10만원만 달라고 사정했음에도 시어머니는 전혀 돈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비록

무급으로 일했다 하더라도 그녀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에서 장사를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 경험은 그녀가 쉼터 퇴소 이후에도 홀로 경제적 활동을 해 나갈 수 있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면 : 한국에 와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 한 적이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응 : 남편하고 잘 살았으면 식당 장사하고 싶었어요.

면 : 자신이 있었어요?

응 : 자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없었을 때 나도 직접 팔 수 있었어요.

면 : 자신감이 있었으면 어디서 생겼어요?

응 : 자신감이 시어머니하고 같이 식당 장사 시작했을 때부터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없어도 나는 장사 잘 했어요. (사례 22, 캄보디아, 통역을 통한 인터뷰)

이주여성들이 일하는 노동 시장이 대부분 저임금 장기간 노동의 서비스업이나 생산 직종이고, 대부분 특별한 기술이나 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녀들이 가족 바깥에서 일자리를 찾아 일을 했던 경험이 있더라도 노동 경험 그 자체가 쉼터 퇴소 후 일자리를 찾는 데 경력으로서 큰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노동 경험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의미를 넘어 한국어를 배우고 가족 외부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 이 때 만들어진 사회적 관계망은 쉼터 퇴소 이후에 경제활동을 계획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

사례 1(베트남)은 쉼터 입소 전 옷 접는 일을 하는 공장에서 일했는데, 공장 사장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끝나고 쉼터를 나가게 되면 그 공장에 다시 찾아가 일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공장에서 다시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례 8(베트남)은 쉼터 입소 전에 휴대폰 부품 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은 그녀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한국어도 배우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어도 계속 일하고 싶냐는 면접자의 질문에 그녀는 당연히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한다.

면 : 만약 상황이 좋아져서, 예를 들어 돈을 안 벌어도 된다,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

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래도 돈 버는 일 계속 하실 것 같으세요?

응 : 자기 돈 있어도 계속 일 하고 싶어요.

면 : 아~, 왜요? 돈 있는데? (함께 웃음)

응 : 그냥 자기 일 해서 돈 버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배운 것도 많이 얻었고 사람들도 만났고.

면 : 이 때 배운다고 말할 때 배운 거는 어떤 거예요?

응 : 사는 경험도 알게 되고 (웃음)

면 : 그리고?

응 : 그리고 한국어도 많이 늘고 ... 없어요. (웃음)” (사례 13, 베트남, 통역을 통한 인터뷰).

사례 17(중국)은 한국에 온 지 4년 후 OO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이중언어강사 양성 과정 참여해 9개월 간 교육을 받고 이중 언어 강사로서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이중언어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 직업 교육을 받을 뿐 아니라 한국어 실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현장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직업 교육을 통해 자신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도 큰 도움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그녀에게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일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면 : 음. 안 무서우세요?

응 : 아니요 무서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손이 있으니깐 어디 가서나 돈을 벌 수 있고 입도 있고 통역도 할 수 있고 (웃음)

면 : 그런 자신감을 언제 생길 것 같아요.

응 : 2~3년 전에 제가 취업을 하면서 생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생각도 안 했지요.

면 : 음

응 : 그냥 힘들어도 여기 떠나면 내가 살지 못 하겠다 그런 생각. 자신이 없었지요.

면 : 음

응 : 내가 취업을 하면서 아~ 한국이 이렇게 돌아가구나. 이런 식이구나 그러면서.

(중략)

면 : 그럼 김선희님이 처음에 애를 키우는 동안에는 자신감이 좀 쳐져있다고 하셨잖아요?

응 : 응. 배우기 전에는 두려워했지요.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활동해보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면 : 네. 그래서 집에 있는 동안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었나요? 나와 보니까 별거 아니었잖아요.

응 : 네. (웃음)

면 : 근데 왜 두려웠을까요?

응 : (웃음) 글썄요. 음~. 나가보지 못 했으니까. 그냥 집에 주요 있고 집에서 생활만 하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지요. (웃음) (사례 17, 중국, 한국어 인터뷰)

특히 사례 17에게 이중언어강사 경험은 한 직업군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요구를 해본 경험이기도 했다. 2015년 경기도 교육청이 2014년 다문화언어강사 전원의 계약을 해지하고 앞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다문화언어강사들은 이에 항의하며 노숙 및 단식 농성에 돌입했는데, 사례 4도 여기에 함께 참여했다. 이처럼 쉼터 입소 전 한국에서의 노동 경험은 여성들이 가족 외부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접촉할 수 있는 계기이자 쉼터 이후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자원이 된다.

이번 조사에 응한 대다수 쉼터 거주 여성들의 경우 출신국 및 쉼터에 입소하기 전 후의 한국에서의 노동 경험은 한국 내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한국어 실력 증가, 자신감 향상 등 쉼터 여성들의 쉼터 퇴소 후 경제활동 의지 및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앞서 기술했듯이 대다수 여성들이 출신국에서 마찬가지로 장시간 저숙련 노동 시장에 진입하고 있고, 출신국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 한 채, 노동 시장 하향 이동을 경험하는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2. 한국어 구사 능력

결혼 초기부터 남편 될 사람과 첫 소통을 하고 입국 서류를 작성하면서 접하게 되는 한국어는 입국 후 이주여성들이 한국 가족에 편입되고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면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 연구의 여성들도 한국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들은 한국어가 자신의 경제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모습과 자원이 될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하며 한국어와 취업을 같은 문맥선상에 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총 27개의 인터뷰 중 한국어로 진행된 8개를 제외한 나머지 19개 인터뷰가 베트남어로 또는 통번역을 수반한 채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아직까지 대다수의 면접참여자들에게 원활한 한국어 구사력은 이루어내기 힘든 이상향을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주민들은 간과할 수밖에 없는 취업의 요건 중 한국어 구사 능력이 이주여성들의 자체적 경제활동을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지 짚고 넘어가려 한다.

1) 자존감 향상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은 입국 초기부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자신이 속해있는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와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 한국어가 서툰 이주여성들은 존중받지 못하고 비하당하는 경험을 한다.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이 다른 능력도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을 하더라도 여성들은 한국어가 미흡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부조리를 묵인한 채 넘길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여성들에게 한국어 공부는 존중받지 못한 경험에 대해 억울함을 바로잡는 도구가 되었다.

사례 1(베트남)은 자신이 남편에게 발언하지 못했다는 것이 한으로 남아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한국어 공부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로 나와 있지만 결국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자 한다. 즉, 한국어는 자신의 발언권과 이외의 기본 권리까지 성립해 주는 여성들의 든든한 보탬이 되는 것이다.

면 : 일할 때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예요?

응 : 그러니까 일이 힘들기는 한데 어떨 때는 다리가 붓기도 하고 땀이 많이 나고 일이 힘들지만 힘든 거 보다는 남편한테 불공평하게 당하고 남편이 나한테 나쁘게 대한 게 더 힘들었다.

면 : 하시면서 좋았던 점은 뭐예요?

응 : 일은 하고 싶지 않데요. 여기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근데 남편이 돈 없다 그리고 쌀조차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한 거고, 2015년에 돈 없어도 꼭 공부하겠다. 못 먹고 죽 먹어도 나는 공부하겠다. 일은 안 하겠다. 남편에게 명확하게 얘기 했데요.

면 : 그럼 공부하셔서 어떤 거 하시고 싶으세요?

응 :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 하게 되면 내가 억울한 거 속상한 거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어서 아마 마음이 덜 힘들었을 텐데 그 동안 말을 못하니까 속에만 쌓여있고 힘들었다. (중략) 내 기본권조차 얘기를 할 수 없고, 그래서 한국말을 꼭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대요. (사례 1, 베트남, 통역을 통한 인터뷰)

사례 21(캄보디아)은 자신을 “쓸모없는 외국인”으로 칭하며 비하하는 남편에게 “나, 한국어 잘하거든”이라는 태도로 받아치며 한국어 이해도를 방어막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방적으로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남편과 동등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아내의 위치로 역할이 전환되는 순간 여성은 가족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상대방에게 각인시키며 그 도구로 한국어 구사 능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된다. 이는 여성의 자존감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이외에도 미래 다른 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밑천을 마련해준 계기가 되는 것이다.

면 : 한국어를 반드시 배워야겠다고 언제 생각했어요?

응 : 너는 외국인인니까. 그 말을 남편한테 많이 들어서 그런지. 너는 쓸모없는 외국인. 어, 나 외국인이야. 나 여기 안 태어난 거 당연해. 근데 날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지. 나 한국어 잘했어. 당신보다 잘할걸? 그래서 하고 그래서 그랬어요. 무시당하지 않을거라고 나 한국말 이만큼 모르면 체크하고 와서 선생님께 물어보고...또 어떨 때는 모르면 회사같은 데는 말하면 ‘오빠 [매니저 호칭], 이거는 인권차별이야.’ ‘뭐야 아니,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웠어?’ ‘아니, 줌 있어.’ (웃음) 오빠에게 이런 말을 하면 저를 무시 못해요. (사례 21, 캄보디아, 한국어로 인터뷰)

이를테면 경제적으로 홀로서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어말은 사례 21(캄보디아)이 일하는 회사에서 자리매김을 하는 데 역시 도움이 되고 있다. 매니저에게 농담 삼아 건네는 “이거는 인권차별이야” 라는 주장은 여성이 한국어를 잘 이해하고 있음과 더불어 권리의 개념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읽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 여성은 다른 수많은 이주동료들이 경험하는 노동현장의 착취까지 어느 정도 예방할 대응책이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가정과 일터 환경 속에서 여성들의 존재를 각인시켜주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안전망이다. 여성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존중되고 실현될 때 비로소 여성들의 자존감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 실력은 자존감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2) 한국어 자원과 노동시장 편입

한국어가 일차적으로 여성의 위상을 높여주며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은 앞서 확인했지만 다음으로 한국어 자원이 구체적으로 노동시장 편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의 한국어 구사 능력에 따라 취업과 노동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우선 한국어 소통이 거의 안 되는 여성들은 현재 자신이 속해있는 가정과 사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고 어쩌면 그런 배경 때문에 노동시장에 들어가 어떤 취업을 할지에 대한 계획이 부재했다. 남편과 시댁이 처음부터 반대했고 후에 임신을 하며 한국어 공부의 꿈을 접어야 했던 사례 4의 여성에게 한국어는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자신의 고민과 걱정을 해결해줄 실마리로 해석이 된다.

사례 4(베트남)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한국어를 꼽으며 한국어 능력 향상이 자신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한국어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 그리고 한국어 공부에 품는 기대와 이상은 여성이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거나 처한 위치와 현실성을 정확히 인지하는데 한계를 보여준다.

면 : 네. 이주여성이어서 먹고 사는 문제 자립하는 데서 더 힘들거나 더 좋거나 그런
거가 있어요?

응 : 어려운 일이 없어요 단지 외국인으로서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 외에는요.

면 : 한국어 말고는요?

응 : 한국어 외에는 남편과 시집가족이 저를 힘들게 해서 쉼터에 입소할 수밖에 없었
으니 쉼터 선생님들이 도와서 이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바램이고, 제가
남편이 있지만 집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는 게 없었고 쉼터에 들어와서 살지만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가끔 언니가 용돈을 주지만 언니는 결혼해서 사는데 남편
과 자녀도 있고 경제도 여유가 없어 자신의 가족을 챙겨주는 것만 해도 벅차요.
그래서 제가 지금으로서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한국말을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발음이 부정확해서 다른 사람들이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 해요.

면 : 응. 이혼을 [하게] 되면 쉼터에 나갈 텐데 나가게 되면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아
요?

응 : 쉼터 퇴소하면 한국어 공부하고 일을 해요. 그 외에 뭐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요.

면 : 응. 그럼 쉼터에 퇴소하게 되면 제일 걱정한 게 뭐예요?

응 : 걱정 많아요. 제가 한국말을 많이 알지 못하고 발음도 부정확해서 다른 사람들이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고민이 되어요.

(중략)

면 : 그러면 만약에 집을 구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한데 그런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
요?

응 : 제가 돈이 없고 한국말도 잘 모르고 집에 나올 때 아무것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되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하고 집이 없는 것은 어
떻게 해결해야할지 정말 막막해요. 천천히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한국말을 좀
더 잘하게 되면 쉼터 선생님에게 이야기해서 제가 퇴소할 때 거주할 수 있는 곳
을 찾아주기를 부탁하려고 해요. 집이 있으면 제가 일하고 돈을 벌고 생활하려
고 해요. 지금은 한국말도 모르고 돈 한 푼도 없어요. (한숨) (사례 4, 베트남, 통
역을 통한 인터뷰)

모든 문제의 원천이 한국어로 귀결되고 있는 사례 4(베트남)와 달리 이미 한국
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 여성들은 취업과 생계유지에 대해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
중국 동포인 사례 17은 자신이 갖고 있는 한국어와 중국어 자원을 살려 쉼터 오
기 전에는 교대에서 이중언어강사 교육을 받았었고 강사 경력을 쌓으며 입소 후

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했다. 퇴소 후 여성의 경제적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면접자가 건넨 “안 무서우세요?” 라는 질문에 “무서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손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나 돈을 벌 수 있고 입도 있고 통역도 할 수 있고” 라는 주장을 할 정도로 여성은 자신감을 보인다.

응: 컴퓨터 안 들어갔어요 동대문에 가면 다양한 물건들이 많고 어떤 것들이 가장 잘 팔리고 그리고 가격을 그냥 도매가격이 얼마예요? (웃음) 물어보고 그냥 나름대로 (웃음)

면: 아~ 나중에 혹시나 장사하게 되면?

응: 네~ 혹시나 장사하게 되면 오전에는 이렇게. 오후에는 저렇게.

면: 주요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동대문에 가서 주요 뭐에다가 흥정을 하세요?

응: 그냥 돈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게. 요즘 애들 돈이 많고 그러니까 유아용품 쪽.

면: 아~ 유아용품 쪽으로

응: 네. 부피가 크지 않고 머리핀이나 악세사리 그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돈도 크지 않고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가지고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들어가는 가격이 나가는 가격이 배가 나더라고요. 진짜~

면: 그렇지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 벌지.

응: 그니까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일반 가게에 비해서. 그것으로 시작해서 차근차근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직장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사대보험이 있어야하고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여유시간에 팔리든 안 팔리든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야지요~

면: 응 응 다 공리를 해놓으셨네 뭐~ (사례 17, 중국(조선족), 한국어로 인터뷰)

사례 4(베트남)가 한국어 공부를 통해 해소해보려고 했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사례 17(중국(조선족))은 구체성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례 17은 소규모 장사를 해볼 생각이라며 동대문에 나가 시장조사를 하는 도중 직접 사람들에게 다가가 “도매가격이 얼마예요?” 하며 대화를 했고 자신의 계획을 현실화하려면 어떤 단계들을 거쳐야 하는지 꾸준히 공부를 했다. 물론 이 두 여성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으며 중국동포 여성이 한국 노동시장에 편입할 수 있는 자원이 훨씬 더 많지만(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14: 57-61), 한국어 능력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둘의 시작점은 확연히 다르다. 한국어는 동포 여성에게 단순히 노동시장과 기회를

열어준 것만이 아니라 사례 4 여성이 갖지 못한,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했다. 이를테면 창업의 현실화를 향해 직접 발품을 판 사례 17의 여성이 확실히 현실 직시에서부터 비롯된 계획성을 겸비하고 있다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노동시장을 어느 정도 파악해 앞으로 먹고 살아갈 미래를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는 차이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홀로 해 나아가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에게는 한국어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고 중국 동포가 구사하는 한국어 능력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초급, 중급, 고급이라는 분류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듯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하는 여성들에게 한국어 구사 능력이 노동시장 편입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어가 어느 정도 능숙한 사례들은 노동시장 진입이 아닌 상향 이동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를 추구하는 여성들에게는 보다 수준 높은 한국어가 요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 5(베트남)는 미용학원에 3개월 넘게 다니며 기술을 터득한 후 미용실에서 일한지 두 달이 넘어가고 있다. 이 여성의 앞길에 중요한 부분이 미용자격증인데 필기에 떨어졌기 때문에 실기도 못보고 있는 처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은 미용실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머리 샴푸하고 드라이, 매직이나 염색할 때 보조하는 등 원장을 돕는 일로 노동의 폭이 제한되고 있다. 이처럼 소통으로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을 넘어 전문적인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여성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한국어가 요구되고 있다. 아무리 실력이 따라줘도 필기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상 실기를 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처럼 여성이 취업을 하더라도 한국어라는 장애물에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다.

면 : 그러면 그거 미용실 하려면 뭐 자격 같은 거 공부해야 되지 않아요?

응 : 네. 그 저는 학원에 3개월 넘어서 다녔어요.

면 : 아, 3개월 넘게 학원 다녔어요?

응 : 네. 그런데 필기 때문에 아직 자격증 못 땀어요.

면 : 아 필기시험은..

응 : 네, 떨어졌어요. (웃음) 그냥 이제 조금 더하면 나중에 저기 또 다시 시험이예요
 왜냐면 필기에 합격해야 돼요. 합격하면 그 다음에 실기해야 돼요.

면 : 아, 필기 다음에 실기해야 돼요?

응 : 네네네. 그래서 필기 아직 안 돼서 그냥 그냥 조금 더 해야 돼요.

면 : 그러면 지금 미용실 가면 어 자격증이 없는 상태인데 미용실가면 무슨 일을 해
 요?

응 : 지금은 미용실 가서 머리 샴푸하고 드라이해주고, 매직이나 그 예, 하는 거예요
 염색하고.

면 : 예. 그러면 미용실에 미용사 언니 따로 있고 옆에서 이제 샴푸 같은 거 도와주고

응 : 네, 원장님이 커트하고 그 담에 저는 샴푸해주고 이렇게 염색하고.

면 : 보조일 같은 거?

응 : 네. (사례 5, 베트남, 한국어로 인터뷰)

다른 예시로 과거에 영어강사를 했던 사례 23(필리핀)은 전문성을 키우고 더 높은 자격을 얻기 위해 한 대학교에서 영어과 전공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시험을 보려고 해도 한국말로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대학교 수준의 시험을 볼 정도까지의 한국말은 잘 몰라 그만 두게 되었다. 영어과였지만 한국어로 써야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학 공부에 몰두를 해보았지만 과거 한국어로 영어를 공부했던 것이 너무 어려웠다고 추억을 한다. 이처럼 한국어 자원은 단순히 노동시장 편입에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상향 이동을 위해서도 필수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실히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주민과 다르게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경제활동과는 떼레야 떼 수 없는 한국어라는 과제가 때로는 걸림돌로, 그렇지만 그 걸림돌을 넘어섰을 때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사회적 관계망

선주민 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 자라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활용하며,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친족이나 친구 등의 관계망에 기댈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 이후에도 사회적·문화적으로 보다 익숙한 환경 속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주여성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들은 이주 경험 그 자체, 그리고 이주 가운데에서도 결혼을 통해 이주했다는 점 때문에 한국 입국 후 자신이 평생 쌓아온 출신국에서의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유리되기 쉬운 조건 속에 놓여 있다. 또한 한국 가족 내에서 폭력에 직면한 경우 한국 가족 이외의 다른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한 이주여성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김이선 외, 2010). 한국 사회와 관계를 맺는 통로가 가족에 한정되어 있었을 경우 이주여성이 가족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곧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기반을 잃어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쉼터 입소는 폭력 상황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동시에 여성들의 입소 이전의 삶과 단절되어 기존에 형성해온 지지기반을 상실할 위험도 있다.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한 이주여성들에게는 물질적·심리적 지지기반의 존재 여부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들은 기존의 지지기반을 회복하고 쉼터를 매개로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여 자원을 확보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데, 직·간접적으로 공적 기관을 기반 삼아 경제생활의 기회를 잡고 쉼터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된 경우도 있었지만, 절반 가까운 여성들은 친정 가족이나 같은 출신국 등 사적 네트워크에 힘입어 쉼터에서 생활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 장에서는 어떠한 개인적 관계망이 이주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자립을 촉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출신국 네트워크 활용

여성들이 같은 출신국 네트워크를 지지 기반 삼아 경제생활을 전망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컴퓨터에 입소하기 전 일을 할 때에도 이미 이러한 네트워크가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면접참여자 27명 중 22명이 컴퓨터 입소 전에 유급 노동을 하였는데, 이 가운데 10사례는 같은 출신국 여성의 소개로 일자리를 구한 경험이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이주여성 지원기관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이주여성들이 같은 출신국 여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였고 일자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다. 2009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아도 결혼이민자(성별 무관)의 구직 경로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차지한 것은 ‘모국인 친구나 지인의 소개’ 였다. 이들이 공유하는 일자리는 부업, 공장, 식당, 어린이집 영어 강사, 교육 관련 사업체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사례 1(베트남)은 컴퓨터 입소 전 이웃에 사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의 도움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공장에서 함께 일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입소 전 일했던 공장에서 계속 일하며 생계를 꾸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면 : 그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응(통) : 공장에서 옷을 접는 일을 했대요.

면 : 그 일은 어떻게 아셨대요?

응(통) : 한국에 와서 집 근처에 베트남 분이 살고 계신데, 결혼 통해서 그 분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분이 돈이 없고 쌀도 없고 생리대 살 돈도 없는 것을 보고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대요.

(중략)

면 : 일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셔서, 일자리를 찾는 건 상대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지

응(통) : 전에 일했던 회사에 가면 받아줄 것이다.

면 : 베트남 언니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언니 말고 다른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응(통) : 같이 일하는 베트남 사람. 거기 일할 때 베트남 사람 몇 명 정도 있어요. 박스 부칠 때 쓰는 거라든지 영수증 쓰는 거라든지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하다. (사례 1, 베트남, 통역을 통해 인터뷰)

2) 친정 가족의 지원

친정 가족은 생활비를 보내주거나 향후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여성들이 쉼터에서 생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지 기반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면접참여자들 중 9명은 친언니나 사촌 등이 먼저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살고 있었고, 이 모습이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결심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사례 15(베트남)는 대학에 입학하여 법학을 공부하는 것을 준비하다가 사촌 언니 4명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언니들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여 한국 남성과 결혼하였다. 친언니나 사촌들은 여성들에게 정서적 지지망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쉼터에서의 생활을 보장해주고 있다. 한국에서 살면서도 사촌이 본인이 쉼터에 있다는 사실을 본국에 알려 연락을 하지 않게 된 경우(사례 10, 베트남)도 있지만, 사례 3(베트남)과 사례 4(베트남)는 친언니로부터, 그리고 사례 15(베트남)는 사촌 언니들로부터 쉼터에 있는 동안 생활비를 받고 있으며 퇴소 후 자립 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면 : 혹시 그러면 직접적으로 돈을 가지고 계신 돈? 뭐 계좌 이런 게 따로 있으신가요?

응(통) : [베트남어] 돈 하나도 없고 [베트남어] 그니까 기본 숙식은 쉼터가 다 제공하니까. 언니가 친언니가, 필요할 때 주는 돈으로. 한 60만 원 이상? 나갈 때 급하게 애를 데리고 나가니까 애기 옷도 못 챙기고, 본인 옷도 못 챙기고 왔겠다. [베트남어] 언니가 몇 백만 원 정도 줬어요. 옷 좀 사라고 언니가 돈 좀 많이 버나 봐요? [베트남어] 언니가 한국에 온 지 6개월 될 때. 아마, 그 가정폭력 당해서, 그 이혼하고 한국에 남을 수 있었고. 한 달 180-2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어서.

면 : 아, 언니가 일을 해서.

응(통) : 네. 언니가, 그 수입이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었어요. (사례 3, 베트남, 통역을 통해 인터뷰)

친정 부모가 한국에 와서 도움을 주는 경우는 5사례가 있었다. 친정 부모의 지원은 생활비 보조, 자녀 양육, 정서적 지지 등 물질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을 아우르고 있다. 3사례에서는 여성들이 처음부터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기 위해 부모를 초청하였다. 사례 25(우즈벡)가 친정 어머니를 초청한 것은 높은

소득을 벌 수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소개받고 그 기간 동안 자녀 양육을 맡기
기 위해서였다. 친정 부모가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4사례에 달했는데, 부모들은
돈을 벌어 여성들이 쉼터에 있는 동안 생활비를 보내주었으며, 2사례에서는 쉼터
입소 전에도 무능력한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보조해주었다. 사례 17(중국(조선족))
은 H2비자로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부모가 여성이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필
요한 돈을 보내주고 있으며, 퇴소 후 보증금 마련에도 친정 부모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면 : 그럼 쉼터에서 아이의 것도 들어가고 어쨌든 쉼터에서 기본적인 것만 제공되고

응 : 네, 기본적인 것을 제공하다보니까. 네

면 : 그러면 그런 돈 들어가는 것들을 어떻게 감당을 하세요?

응 : 돈 들어가는 것? 그냥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고 (웃음) 그렇게 해요.

면 : 음. 도움으로 잘 되어요?

응 : 그냥 최대한 아끼는 정도로 그렇게

(중략)

면 : 그럼. 그래도 월세 보증금 몇 백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응 : 네. 그냥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고 그러면

면 : 그러면 될 것 같으세요?

응 : 네. 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사례 17, 중국(조선족), 한국어로 인터
뷰)

친정 부모는 “어떤 것은 잘못된지 어떤 것은 옳은지 알려줄 수 있고” (사례
12, 베트남),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정서적 지지자 역할
을 하였다. 친정 부모로부터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여성들이
이혼 후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삶을 계획하는 것을 수월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사례 22(캄보디아)는 퇴소 후 자녀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데에서
이후의 삶을 기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친정어머니를 초청하여 도움을
받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

면 : 그럼 몇 개월 후 바로 임신하고 집에만 있었네요. 집에서 살림하고 한국어를 공
부했네요. 그때 아직 친정엄마를 초청하지 않았어요?

응 : 네. 막달 출산하기 전에 친정엄마를 초청했어요. 친정엄마가 한국에 와서 3개월 있다가 다시 베트남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제 아이가 7-8개월 됐을 때 친정엄마를 다시 초청했어요. 남편이 혼자 일하니까 돈도 부족하고 힘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아이도 생겼고. 그래서 친정엄마가 와서 아이를 돌봐주시고 저도 남편과 함께 집에 생활비 보태기 위해 일하러 가는 생각했어요.

(중략)

면 : 그럼 현재는 친정엄마가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동생에게 용돈도 줬어요?

응 : 친정엄마도 저를 용돈을 줬어요. 남편은 주지 않았으면 친정엄마가 줬어요. 그리고 지금은 공장에 가서 일하고 저를 도와줘요. 제가 뭐가 부족하면 도와줘요. 베트남에 돈을 가져가는 것은 생각을 없었어요. 제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중략)

면 : 친정엄마가 한국에 계시는 것은 동생에게 어떤 큰 힘이 줄 수 있어요?

응 : 친정엄마가 계시면 어떤 것은 잘못된지 어떤 것은 옳은지 제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제가 잘 못하면 가르치고 제가 힘을 들 때 기대할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힘들 때도 친정엄마와 아이가 있으면 마음 편안해요. (사례 12, 베트남, 베트남어로 인터뷰)

그런데 사례 3(베트남)의 경우에는 친정 가족의 일차적인 도움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도 발견할 수 있다. 사례 3은 한국에 있는 친언니가 보내온 돈으로 생활하고 퇴소 후에는 자녀 양육을 위해 예비 형부의 집에서 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여성은 돈을 모아 전셋집을 마련하고 한국어를 공부하여 사무직을 찾을 계획이라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언니가 주는 돈은 다 써버리고 형부의 집에서 살면서 언니가 일하는 공장에 취직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니 없는 삶은 계획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례 23(필리핀)처럼 본국에 있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쉽게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남편이 본인과 자녀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나 매한가지인 상황에서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은 생활비를 보내줄 뿐만 아니라 본국으로 돌아오라고도 하지만, 딸들의 송금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 외국으로까지 간 결혼이 실패했다는 것에 대한 낙인 등 본국 커뮤니티 내에서의 사회적 체면으로 인해 여성들의 선택의 폭은 넓지 않다.

3) 컴퓨터 입소자들과의 유대

여성들은 컴퓨터에서 상담과 치유회복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면서 폭력으로부터의 치유와 문제 해결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와 함께 컴퓨터에 머무는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서도 힘을 얻고 있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들어주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이 여성들이 폭력 경험을 치유하고 컴퓨터에서 밝게 생활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서로 간의 공감과 위로의 경험이 여성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은 생일을 기념하고 날짜를 정해 같이 요리를 해먹는 등 특별한 이벤트를 하면서 자칫 답답할 수 있는 컴퓨터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다. 앞으로의 경제생활에 대해서도 먼저 컴퓨터에 온 여성들의 조언이 여성이 미래를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면 : 혹시 컴퓨터에서 살면서 이젠 좀 마음에 든다, 편하다 이런 점 있으세요?

응 : 음, 많이, 지금, 네, 다 좋아요. 한 가족, 그냥 한 가족처럼 잘 대해주시고, 그리고 좀 관심 있게 별로 이렇게 남의 스토리가 별로 궁금하지 않아도 잘 들어주시고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힘을 주셔서, 좋고. (사례 25, 우즈벡, 한국어로 인터뷰)

여러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살면서 발생하는 갈등도 때로는 그 해결 과정에서 여성들의 치유에 도움이 되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함께 하면서 관계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다. 특히 아이들 간의 다툼이 여성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 갈등은 때로는 극복되지 않은 채 문제로 남기도 하였지만, 여성들은 갈등을 계기로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컴퓨터 입소 전 가족 내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면 : 다른 분들과 같이 지내는 거는 괜찮으세요?

응 : 아이, 애기 때문에. 그, 원래 그렇잖아요. (웃음) 애기 있으니까, 싸울 수도 있잖아요. 애기 땀에. 애기를 그 엄마가 못 보면, 애기가, 힘들면 몰라잖아요. 모르는데, 엄마가 대신,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못한, 그것도 못하고, 싸울 수도 있고 근데, 싸우다가, 지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 생각해. 여기에서도, 다른 사

람이랑 싸울 수도 있는데. 싸우다가, 지낼 수도 있고, 싸우다가 지낼 수도. 집에 서도 우리 가족들이랑, 어, 시어머니랑 시, 남편이랑 그, 이렇게 하면은 좋았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그런 거를, 그런 거를 내가 잘못 한 거예요. 제가 마음, 마음에 아픈 거는, 그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언니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왜냐면 싸울 일이 없잖아. 서로 마음이 아픈 거를, 마음에 걸리는 거 다 얘기해, 서로한테.’ 그, 얘기 엄마도, 나한테, ‘다윤이 엄마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면 : 아,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을

응 :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 나도, 언니한테도 막 속상한 거 있는 거를 얘기 하, 해요. 속상한 거, 를 얘기해요. 근데 내 생각, ‘아, 여기 쉼터에서 속상한 거 를 다 얘기했는데,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일이 안 생겼는데. 대화를, 잘 안 돼서, 대화를 잘 안 돼서 그렇고, 그렇구나’ 는 생각 들 었어요. 저도 남편한테, 그랬어요. (사례 23, 필리핀, 한국어로 인터뷰)

4) 선주민과의 관계망

면접참여자들은 동향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선주민과의 관계망을 형성해가고 있었다. 여성들은 선주민과의 만남 을 통해 폭력적인 가족 관계에서 벗어나 보살핌을 주고받는 경험을 했으며, 이는 한국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선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이주여성이 경 제적으로 자립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사례 21(캄보디아)의 경우 시집이 운 영하는 과수원에 일하러 온 아주머니들이 여성에게 돈 관리는 어떻게 하냐고 물 으며 통장에 대해 알려주었다. 이 도움으로 여성은 혼자 힘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농협에서 사과박스 포장하는 일에 대한 대가를 통장으로 받아 직접 관리했다. 농 협일은 시집 발에 일하러 온 아주머니가 소개해주었다.

응(통) : 그 후에는 시누이랑 같이 살면서, 시누이가, 관심, 본인한테 관심도 하지 않고, 밥 같은 거 반찬, 밥도 주지 않았고요. 남편 집에 없을 때 반찬이라 과일 같은 거는 시누이가 다 숨겨버리고 그래서 본인이 먹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또 너무 슬프고, 그래서 옆에 있는 토마토, 예, 주인한테 가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밥 먹기도 하고 예, 돈 가끔, 그 주인이, 돈 주기도 하고, 안 줄 때도

있어요.

(중략)

통 : [베트남어로] 주로 언니가 가서 그 사람의 일을 돕는 거지요?

응(통) : 일을 돕는 게 힘들었지만 즐거웠어요. 그 언니가 좋은 사람이에요. 한 번 제게 한국어 공부하는 책을 사주었어요. 관심을 가져주고 목욕탕도 데려다주었어요. 그 언니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감기에 심하게 걸렸어요. 콧물이 줄줄 흘렀고 한 달 내내 아팠어요. 남편이 바다로 나갔고 시누이가 있지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와 성관계를 할 때 하얀 냉이 생겨서 많이 아팠어요. 시누이에게 말했지만 시누이는 괜찮다고만 했어요. 토마토 언니는 바로 저를 병원으로 두 번 데려다주었어요. 그래서 토마토 언니를 너무 좋아해요. (사례 14, 베트남, 통역을 통해 인터뷰)

4. 자녀 양육

면접참여자 27명 중 자녀가 있는 여성은 24명, 자녀가 없는 여성은 3명으로 여성들 대부분이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이주여성들의 어머니로서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아니었지만, 면접 과정에서 여성들 대다수가 어머니로서의 자녀 양육의 역할을 강조했고, 실제로 임신, 출산, 양육의 경험과 계획이 쉼터 입소 전후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자녀 양육이 여성들의 퇴소 이후 경제활동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하고자 한다. 많은 경우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아내이자 며느리, 어머니로서 전통적인 젠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는다. 특히 쉼터에 입소하는 여성들은 대다수가 남편 및 시집이 가한 폭력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훨씬 더 강력한 억압적 젠더 구조 속에 놓여 있었을 수 있다. 이선행(2013)이 지적한대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섹슈얼리티는 한국 입국 때부터 남편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고, 피임에 대한 지식 부족 등으로 결혼 후 조기 출산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상업화된 결혼 중개 방식과 위장결혼 담론 등으로 인해 이주여성들의 결혼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출산은 결혼이주 여성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동시에 한국사회에서 임신, 출산, 양육의 경험은 이주여성의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큰 사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1) 어머니로서의 책임감

‘엄마’로서의 책임감 내러티브는 대부분의 면접사례에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여성들 대다수가 자신이 ‘엄마’임을 강조하며, 직접 양육 뿐 아니라 직접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쉼터에서, 그리고 퇴소 이후에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사례 25(우즈벡(고려인), 한국어로 인터뷰)는 쉼터에 입소한 후 주중에는 단양의료원에서 통역 등을 돕는 의료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주말에는 식당에서 하루 12시간 홀서빙을 하고 있다.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하면서 하루 12시간 홀서빙을 하는 것이 힘들지 않는

나는 질문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가끔 피곤해도 좀 악착같이 좀 모으려구요. 제가 딸을 데리고 가야 하니까. (작게 웃음)” 라고 대답한다. 쉽터로 피신하면서 어린 딸을 데리고 나오지 못한 그녀는 현재 쉽터에 혼자 거주하면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녀에게 소송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양육권 문제이다. 그녀에게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은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일하게 하는 이유이며, 엄마로서의 책임감이 자립 이후의 삶을 계획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쉽터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에게 자녀는 자신의 삶을 기획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동기이자 자신감과 용기의 원천이다. 동시에 자녀는 타국인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여성들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감정적 의존 대상이기도 하다. 김현미(2010: 162)는 아이의 출생이 이주여성들에게는 “한국에서 ‘내 가족’ 을 구성한 ‘사건’ ” 이며, 가족 내부의 이질적 존재로 살아온 이주여성들에게 자녀는 자신들의 외롭고 고립된 상황을 상쇄시켜 줄 대안이 된다고 설명한다. 사례 13(베트남)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을 가지고 약하게 태어난 딸을 돌봐야 한다는 점에서 자녀를 키우는 일이 특히나 고된 일이다. 그녀는 기본적인 양육비에 더해 딸이 평생 약을 먹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닐 수 있도록 돈을 벌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훨씬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다. 그러나 그녀에게 딸은 단순히 자신이 돌볼 책임을 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타국인 한국에서 감정적 유대를 나누는 상호 의존적인 상대이다. 아이와 서로 챙겨주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그녀에게 아픈 자녀는 부담이 아니라 한국에서 함께 살아가갈 동반적 존재이다. 사례 13(베트남)은 현재 미싱일을 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 있다. 보통 8시 반에서 5시까지 일하고 일한 날짜에 따라 급여를 받는데, 보통 월 30만원에서 70만원 선이다. 그녀는 많지 않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아끼고 아껴 1년 새 400만원 가까운 돈을 모았다. 그렇지만 이 정도 월급으로는 경제적 자립을 하고 심장병이 있는 자녀를 키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다. 그녀의 작은 소망은 학교 근처에 집을 얻어 아이와 함께 살면서 자신은 일을 하고 딸은 학교를 다니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그녀 앞에 놓여 있다.

이선형(2013)은 결혼이주여성의 모성 및 정체성을 탐구하면서 “결혼이주여성들

에게 이혼은 ‘국민의 배우자’에서 ‘국민의 어머니’로 자신의 정체성을 재조정해야 하는 사건”(171-2)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결혼 관계의 종료는 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기존의 외국인 배우자에서 실질적으로 자녀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고민하는 어머니로 정체성을 전환하는 사건인 것이다. 남편이나 시집의 폭력 피해자이자 동시에 자녀를 가진 어머니이기도 한 이주여성들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이나 시집에 되돌아가거나, 남편/시집에 자녀 양육을 맡기고 자녀는 면접권을 선택하는데, 여러 형태의 자녀 양육의 의지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면접참여자들 중 대다수는 자신이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키우고 싶어한다. 사례 6(베트남)은 남편이 과거에 자신뿐 아니라 아이를 때린 적이 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아이가 나중에 아빠를 닮아 잘못될 것을 우려하며 반드시 자신이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응 : 그 저도 ... 애기 왜 꼭 키워야 되냐면, 저 애기 아빠가 맨날 술 먹고 도박, 하, 하고 애기한테도 때린 적도 많이 있어요. (면 : 애기 때린 적도 있고.) 네. 그래서 애기, 만약에 애기 아빠가 키우면 제가 또 생각에 애기도, 애기 아빠 전염돼서 나쁜, 나쁜 일하고 나쁜 말 막 많이 배우고 그래서 나중에도 좋은 사람 안 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애기 꼭 키우고 싶어요. 좋은,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일로 양육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례 6, 베트남, 통역을 통해 인터뷰)

반면 사례 26(일본)은 한국에서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도록 자녀를 키우며 살아왔지만 최근 양육권 청구를 포기했다. 그녀는 남편과 사는 동안 가사일부터 생계 유지까지 모든 일을 다 떠맡아 했는데, 자신이 여전히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양육권이 아니라 면접권만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자신이 자녀들의 삶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지금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쉽터 퇴소 후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성공해서 자녀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스스로 “심리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는 일이 현재의 자신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응 : 그렇지만 내가 혹시 길을 닦아 놓아줄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한 지혜라던가 경제적인 지원이라던가. 그 자리를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게 좋지 않을까요? 내가 나가서 꼭 성공하고 만나야 되겠다. 초라한 이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있다. 일 부러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나의 심리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독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사례 26, 일본, 한국어로 인터뷰)

2) 돌봄 지원 네트워크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자녀 양육은 때로는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여성들이 자녀 양육에 대해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쉽터 퇴소 후 싱글맘으로서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쉽터에 거주하는 동안에도 자녀가 있어서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사례 3(베트남)은 자녀돌봄노동을 수행하느라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국어 공부를 꾸준히 하지는 못하고 있다.

응 : 어린이집에 가면 내가, 공부하고 그 공부 나오게 되고, 아이가 들어오면 애가 자고 있지 않으면 또 얘기랑 놀아줘야 되고

면 : 아,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나요?

응 : 네.

통 : 몇 시까지 다니나 애가? 9시부터 4:30까지 어린이집 다니고. 근데 호영 씨가 아침에 공부 나갔다가 들어와서 밥 먹고 그러면 거의 애기 데리러 가야 되고 그러면 그 시간이 없으니까 애기가 집에 오면 얘기랑 놀아주느라 그래서 애기가 한 9시 쯤에 잠이 들면 그 때서야 좀 한국어 공부를 혼자서 공부하게 되는구나. (사례 3, 베트남, 베트남어 인터뷰).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들의 경우 아이를 돌보아줄 기관이나 개인적 네트워크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해도 보통 아이가 오전 8시 30분에 등원하고 오후 5시에 퇴원하는 일정에 노동시간을 맞추어야 하는데, 여성들이 여기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이를 돌보아줄 친정 식구나 이웃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점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을 어렵게 한다.

면 : 네 그러면 아이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응 : 이진 한국에서, 한국에서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시간 이 일정해야 일할수 있어요 다른 엄마들을 보면 아침 8시 30분에 어린이집에 보내고 오후 4시에 데려와야 하는데 그런 시간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면 : 음.

응 : 지금은 이주연 씨도 주방에서 일할 때 아침에 9시에 가서 오후에 5시에 들어와요 일을 계속 찾아 어려워요.

면 : 일 찾기 어려워요?

응 : 네.

면 : 중국이었으면 쉬웠을까요?

응: 중국에

면 : 중국이었으면 어땠을 거 같아요?

응 : 중국에 우리 엄마 얘기 하면 더 쉬워요

면 : 아, 중국에서는 엄마가 얘기 봐주니까

응 : 얘기 쉬워요

면 : 엄마가 얘기 봐주고

응 : 네.

면 : 그럴 수 있을 거 같아요?

응 : 네. (사례 18, 중국, 통역을 통해 인터뷰).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내 사회적 돌봄 네트워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돌봄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친정 부모를 한국으로 초청해 양육의 책임을 나누거나 혹은 자녀를 친정으로 보내 출신국에서 키우는 초국적 양육을 시도하기도 한다(허오영숙, 2009). 면접참여자들 중에도 쉼터 입소 전에 친정 어머니를 한국에 초청해 양육의 도움을 받은 사례가 두 사례 있었다. 돌봄을 함께 나눌 네트워크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주여성들은 초국적 양육을 하나의 대안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초국적 양육이라는 선택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친정 부모를 초청할 수 있고, 출신국에 자녀를 보낸다 하더라도 친정 부모가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여성들만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한계가 있다.

김이선 외(2010)는 사별/이혼한 이주여성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사회적 지지망이 없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야간이나

휴일, 방학시의 자녀돌봄 공백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선주민 여성들 역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렇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은 선주민 여성에 비해 활용할 수 있는 돌봄 네트워크가 훨씬 적기 때문에 자녀돌봄 공백이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어머니로서의 책임감이 이주여성들의 자립 의지 및 퇴소 이후의 경제적 삶을 계획하는 데 중요한 심리적 기반이 되고 있다면, 현실적으로는 이를 수행할 수 없는 조건에 놓여 있다는 것은 여성들에게 책임감만큼이나 심적 고통과 죄책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이 여성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동기로 자리잡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여성들이 실제 퇴소 이후 경제활동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기에는 돌봄 공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놓여 있다.

IV. 여성가족부 쉼터 정책이 이주여성의 자립에 미치는 영향

1.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의 역할과 실태

1) 이주여성쉼터의 역할

이주여성쉼터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체계 중 하나로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에게 최후의 보루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선주민들처럼 폭력을 당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정이나 친지, 그 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이주여성들이 경찰이나 1577-1366, 상담소, 지인들을 통해 마지막 피신처로 택하는 것이 쉼터의 현주소다. 이렇듯 쉼터는 폭력피해로부터 피신해 온 이주여성들에게 절실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위치에 있다.

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운영지침에 의하면 이주여성쉼터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통한 피해자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201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이에 따르면 쉼터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처이고 지원처이자 인권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따라서 쉼터는 단순히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의 피신처나 보루처로서의 사회안전망일 뿐만 아니라 ‘인권지킴이’로서의 역할도 부여받고 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일단 쉼터에 입소하면 생활의 안전을 찾을 뿐만 아니라 법률 지원을 받아 이주여성들의 기초적인 인권인 체류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쉼터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다.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은 이주여성쉼터의 사업은 주로 다음과 같다. 숙식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포함)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본국으로의 출국 관련 지원,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이다. 이와 같은 생활 보호, 심신 치유, 법률 지원, 귀국 지원, 자립

을 위한 교육과 정보 제공 등의 지원 사업들은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위기 극복과 생존을 위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들이다.

2) 이주여성들이 본 쉼터 서비스

이주여성쉼터는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의 일차적 사회안전망임과 동시에 여성들이 쉼터 퇴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여성들이 쉼터가 제공하는 지원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폭력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며 체류권을 확보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닦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반에서 더 나아가 쉼터가 여성들의 자활과 자립의 터전이 될 수 있기 위해 여성들은 취업 교육과 취업 연계, 취업 허용 등과 같은 경제활동 지원을 희망하고 있었다.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사회의 적응과 한국에서의 취업을 위한 기초단계로서 모든 쉼터에서 제공되고 있다. 취업 뿐 아니라 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 교육을 받기 위해 한국어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례 3(베트남)은 쉼터에 입소한지 9개월 되었으며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녀는 처음에는 취업 교육부터 바로 받고 싶었지만 한국어부터 공부하는 게 좋겠다는 쉼터 근무자의 조언에 따라 한국어를 배우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쉼터 근무자는 그녀에게 취업 상담을 받으러 갈 것을 제안했다.

면 : 이렇게 한국어에 공부를 대부분 투자하시는 게. 다른 공부, 다른 취업 공부도 있을 수도 있지만, 한국어 공부에 투자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응(통) :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여기 프로그램에 있어야 되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다른 입소친구들도 취업 교육을 받고 싶다, 기술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들어 온지 얼마 안 되고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우선 교육받으려면 한국어를 돼야 돼서, 때문에 한국어부터 배우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그렇게 따른 거예요.

(중략)

응(통) : 담당하는 선생님이, 다음 주에 상담 받으러 가자. 그 취업 교육 받는 거 상담 받으러 가서 신청하자라고 했는데 어떤 취업교육인지는 모르겠어요.

면 : 취업 교육을 받으러 어디?

응(통) : 취업 교육 상담하는 곳으로 가서 상담해보자. 가능하면 취업교육을 신청하자.

면 : 아, 그니까 상담은 받으러 갔는데 무슨 취업을 하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우선 거기 가서 상담? 응웬 씨는 뭘 배워보고 싶어요?

응 : 컴퓨터 다루는 것, 실무 일을 하고 싶어요. 사무실에서. (사례 3, 베트남, 통역을 통해 인터뷰)

퇴소 후 자립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어 공부를 넘어 다른 기술과 자격증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는 여성들도 있다. 사례 20(캄보디아)은 외국인이라고 무시당하지 않고 인권을 주장하며 자녀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 다문화 강사 일을 꿈꾸고 있다. 그녀는 한국어능력시험과 운전면허증 취득을 준비하면서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면 : 한국어시험 준비하세요?

응 : 6월 시험은 놓쳤어요. 3급은 통했고 4급을 준비하고 있어요. 4급은 합쳐져서 5급을 따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운전면허도 따야 돼요. 필기는 합격했고 실기를 해야 돼요. 평일은 못하니까 주말만 준비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을 꼬셔서 배우고 있어요.

면 :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응 : 저는 한국 사람 아니잖아요. 외국 사람은 한국어를 못하면 무시당하잖아요. 한국문화나 말, 법, 인권도 배우잖아요.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얘기를 키우잖아요. 다문화 강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애가 자랑해요. “엄마가 한국어 강사예요” 라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애에게 부끄럽지 않게. 창피하지 않게 욕심내서 하고 싶어요 (사례 20, 캄보디아, 한국어로 인터뷰)

사례 26(일본)은 19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면서 가족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남편의 폭력도 참고 살아왔다. 그녀는 쉼터에 입소한 후 가정폭력상담원교육을 이수하였는데, 교육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가정폭력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들을 알 수 있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면 : 따로 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은 참여하지 않으시고?

응 : 여기서 하는 것을 좀, 가정폭력 상담사. 자격증은 못 받았지만. 일단 치유가 된다고

대표님이 꼭 받으시라고. 이렇게 토요일마다 아침 9시부터 7시까지 공부했어요. 그 때. 6주. 백세. 100시간 받으라고 해서. 하여튼, 치유는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정폭력에. 또 정신과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왜 남편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런 것도 알게 되고 아, 현실이 그렇다. 왜 대한민국에서 왜 가정폭력이 끊이질 않는지. 사회적인 부분이라던가 인식이라던가. 사람들의.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사례 26, 일본, 한국어로 인터뷰)

컴퓨터의 공식적인 기능에 직업 훈련이나 알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컴퓨터에 자녀를 동반하고 있거나 퇴소 후 독립적인 거처를 마련하여 생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컴퓨터에 있는 동안에도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컴퓨터에서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컴퓨터는 안전한 공간과 숙식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법률 및 의료 지원 외에도 여성들의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관련 기관 연계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면접참여자 27명 중 17명이 현재 컴퓨터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10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한 경험이 있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한 경험이 있는 10명의 여성 가운데 컴퓨터의 소개나 컴퓨터와 연계를 맺고 있는 지역의 이주여성 지원기관의 소개를 통해 유급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5사례 있었다. 이 경우 이주여성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업체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어 서로가 윈-윈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컴퓨터와 지역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자립 도모는 사례 5(베트남)에서 잘 나타났는데, 이 여성은 컴퓨터를 통해 소개받은 기관에서 미용 기술을 교육받은 후 현재 미용실 보조로 일하고 있다. 현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으며, 퇴소 후 집 보증금으로 2~3,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컴퓨터에 있는 동안 1,000만원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면 :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미용실, 미용사 학원은 어떻게 해서 알고 갔어요?

응 : 여기서는 선생님 그냥 저기 데려가서 얘기했어요. 미용실 YWCA. 소개해줬어요.

면 : 아, YWCA 거기 직업 소개하는데?

응 : 네.

면 : 쉼터에서 거기 연결해주니까 와이에서 미용사 이런 거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한 거예요?

응 : 네네.

면 : 아, 그렇게 해서 그게 서로 맞은 거구나?

응 : 네. (사례 5, 베트남, 한국어로 인터뷰)

기관이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알선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을 잇는 허브 역할을 하면서 여성들이 사회적 연결망을 확보하는 것을 촉진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사례 7(베트남)은 쉼터에 함께 거주하는 베트남 여성의 소개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으며, 퇴소 후에는 쉼터에서 만난 중국 여성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사례 2(베트남)와 사례 12(베트남)는 쉼터 입소 전 한국어를 배우러 다니던 센터에서 만난 베트남 여성을 통해 취업한 경험이 있으며, 사례 25(우즈벡)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센터에서 소개한 러시아어 통역일을 하는 언니를 통해 지역 의료원에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 취직할 수 있었다.

면 : 의료원 일은 어떻게 구하시게 됐어요?

응 : 그, 글썄요. 제가, 계속 소원했던 그런 좀, 직장인 것 같아요. 근데, 기회가 없었어요. 청주에 이사 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애만 키우면서 집에만 있다가, 그, 다문화가족센터에 어떤, 저기, 그, 분을 통해서, 러시아어 하는, 이제, 어떤 언니를 알게 되었고, 그 언니를 통해서 이제 취직하게 됐어요. ... 보건소에 자주 다니면서, 다문화가족센터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두 번 들러서 거기서도 취직, 좀 취업시켜 달라고 그래서 그 이력서 놔두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취업 안 시켜주고, 그냥, 어떤 언니를 소개했는데 그 언니랑 조금 연락하다 보니까 이 언니가 이제, “의료원에서 코디네이터를 뽑고 있다. 한 번 가서 면접 보라.” 그래서 면접 보고 합격하고 (사례 25, 우즈벡, 한국어로 인터뷰)

쉼터에 거주하면서 기본적인 숙식은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수입 가운데 자녀양육비 등 일부 추가로 발생하는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저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마련한 목돈은 주로 퇴소 이후 집을 구하는 데 쓸 예정이

었다. 직접 일을 하고 번 돈을 스스로 관리하며 자녀를 돌보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여성들은 자신감을 회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사례 13(베트남)은 1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다가 쉼터 입소 후 쉼터 선생님의 소개로 미싱공장에서 보조일을 하고 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쉼터 선생님의 도움으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나면 공장에 나가 미싱 기술을 배우면서 월 50~60만 원을 받고 있다. 향소심을 진행하느라 일을 빠지게 되어 급여가 다른 사람보다 낮았지만 자신이 번 돈으로 자녀에게 먹을 것을 사줄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만족해 했다. 그녀는 1년 동안 일을 해서 400만 원을 모았고, 이 돈은 퇴소 후 자녀와 함께 거주할 집의 보증금으로 쓸 계획이다. 그녀는 쉼터에 있는 동안 열심히 일하고 기술을 배워 더 높은 급여를 받는 곳에서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면 : 아이에게 먹는 것을 사주는 것 외에 또 다른 지출이 있나요?

응 : 없어요. 제가 사면 선생님들이 못 사게 해요.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선생님이 사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9~10년 간 아이에게 먹는 것을 사주지 못 했으니, 전에는 도둑처럼 몰래 사주어야 하고, 지금 돈을 버니까 사주고 싶다고 했어요.
(눈물) (사례 13, 베트남, 베트남어로 인터뷰)

쉼과 치유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쉼터에 입소해 있는 여성들도 취업을 하거나 취업 교육을 받고 싶어 하였다. 사례 22(캄보디아)의 경우 그녀가 입소해 있는 쉼터는 쉼과 치유를 중심으로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고, 지역 특성상 이주여성과 자녀들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외출과 취업 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했으나 동의를 얻지 못했고, 면접 도중 일하고 싶다는 욕구를 표현했다.

면 : 쉼터에서 돈을 버는 일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응(통) : 허락하지 않았어요.

통 : 얘기했어요?

응(통) : 네, 허락 안 해요.

통 : 누가? 소장님?

응(통) : 네, 소장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토마토를 따고 싶어서 얘기해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분한테 알려 주세요.

면: 아, 네, 괜찮아요. 소장님이 반대하는 이유 말한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소송이 끝나면 가야 되든지 뭐, 이유가 있어서 같은데요.

응(통): 말했어요.

면: 그래도 본인은 일하고 싶은 거죠?

응(통): 네.

면: 일을 한다면 어떤 아르바이트,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응(통):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사례 22, 캄보디아, 통역을 통해 인터뷰)

한국어 구사 능력이 다른 이주여성들보다 유창한 사례 17(중국(조선족))은 여성들이 한국어 교실이나 화장품 제조, 요가 등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보다 취업 교육이나 기술 습득을 통해 쉼터 퇴소 후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다. 또한 그녀는 쉼터 퇴소 후 자립쉼터에 가서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그곳에서 허용되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주여성쉼터에 있는 동안 직업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그녀는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응: 다른 데는 직업훈련이나 지금처럼 요가나 뭐 댄스나 그런 거보다 오히려 직업적으로 좀 나가고 자기가 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직업훈련. 왜냐하면 쉼터에 있으면서 왜냐하면 한국에서 취업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기 때문에 1년에 300만원 교육비를 지급해주는 거가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쉼터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화장품을 만들거나 그런 거 쓸데없는 거를 하지 말고 자기가 확실히 필요한

면: 응. 나중에 직업을

응: 네. 나중에 직업을 할 수 있는

면: 직업 할 수 있는 기술

응: 네. 어떤 주부는 컴퓨터도 하기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미싱 같은 기술 같은 것도 그냥 여기에 있는 동안 시간만 흘러가는 게 말고 직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면: 그런 프로그램

응: 한국어나 요가 그런 거보다는 나가서 배울 수 있는 배웠으면 좋겠어요. 물론 한국어도 필요하지만 여기서 해주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어 외에 그냥 자기 직업을

위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면 : 그래요. 또 쉼터 생각에는 그런거가 있지요. 힘들었으니까 여기 있는 동안이라도 좀 쉬어주고

응 : 근데 다들 같이 지내보니까 쉬는 거보다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것. 또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선호해요.

면 : 응. 그것도 선호하겠지요. 당장 쉼터에 계속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응 : 네. 어떤 사람은 컴퓨터 기초도 몰라요. 그런 거를 굉장히 배우고 싶고 쉼터에 있는 동안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디딤터에 가면 직업. 취업 프로그램을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다 모든 사람이 다 거기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갈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사례 17, 중국(조선족), 한국어로 인터뷰)

사례 26(일본)은 본인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쉼터에 있는 다른 여성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쉼터의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제안하였다. 쉼터와 공장 간에 서로를 보증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구인구직을 하고, 이를 통해 여성들에게 임금을 제 때 지급하고 성희롱, 성폭력 등이 발생하지 않고 4대 보험이 보장되는 등 안전한 일자리를 연계하자는 것이었다.

면 : 그래도 보셨을 때, 선생님 아니더라도, 쉼터에서 이런 건 바뀌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경제적 자립을 위해 쉼터에 이런 게 더 생겼으면 좋겠다. 교육 프로그램이나

응 : 저는 공장이나 그런 데 못 다니겠지만은, 공장에 다니는 애들한테는 그런 윈스톱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주 여성이라도 정말 속고 돈 못 받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걸 미리 계약처럼 보내겠다. 우리가 보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장님과 공장하고 이렇게 윈스톱으로 들어왔다. 이 사람 손이 비워있다. 하면 소개시켜 주는 네트워크 같은 거. 외국인이라도 된다는 조건으로 그런 거 도와주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일자리를. 나는 그래 안 가겠지만, 내가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동생들을 보면 안전한 직장에서 할 만큼 돈 벌 수 있고 4대 보험이 라던가 받으면서 진짜 안전하게 일했으면 좋겠고 성희롱이나 성폭력 없는 공장 에서, 돈을 잘 내주는. 몇 개 몇 개 있고 그 사이에서 애들이 고를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나는 그나마 친절 가서 돈 받을 수 있고, 그럼 큰 돈이 되잖아요. 애들은 친절에 오히려 보내줘야 해.

(중략)

면 : 다른 분들의 상황을 보실 때, 이 분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려면 뭐가 가장 필요한 것 같으세요?

응 : 아까도 말했듯이, 소개, 안전한 직장. 한국 사람들도 직장 다니면서 당할 수 있는 것이 있지않은 이주 여성이 더 취약하잖아요. 그걸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쉼터나 센터가 되어서 그걸 보장으로 안전한 직장에 가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례 26, 일본, 한국어로 인터뷰)

이렇듯 쉼터 입소 이주여성들은 향후 쉼터에서 퇴소하고 자립을 하기 위해 실제 일을 해서 수입을 얻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취업 교육과 자녀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며, 시집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곳에서 일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2. 여성가족부 쉼터 정책의 한계와 딜레마

1) 폭력 피해 범위와 입소 자격

현재 이주여성쉼터를 이용하는 주된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할 때, 어떠한 폭력이 가정폭력으로 인정받아 여성들이 쉼터에 입소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하면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행위를 말함” 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주여성쉼터 입소자에게 적용되는 폭력이 ‘신체적’ 폭력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은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다행히 여성가족부의 2015년 운영지침에서는 “방임, 유기 등 무형의 가정폭력피해자는 상담을 통하여 사실 확인 후 입소” 라는 규정을 넣어 쉼터 입소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방임이나 유기에 처한 이주여성들이 이를 증명하여 쉼터에 입소하는 것은 가능해졌을지라도, 혼인파탄의 귀책사유 없음으로 인정받고 안정적인 체류권을 획득하는 것을 별개의 문제이다. 방임이나 유기 등을 피해 쉼터에 왔더라도 체류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여성들은 선불리 폭력을 피해 쉼터에 올 용기를 내지 못할 것이다. 쉼터에서의 폭력 피해 인정과 체류

에 있어서의 귀책사유 없음 인정이 조율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입소 자격이 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자” 로 한정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으로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 이유로 미등록자가 된 결혼이주여성은 쉼터에 입소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미등록 신분에는 이주여성이 성폭력이나 성매매 피해를 당하더라도 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2014년 말 제주에서 발생한, 이혼 후 미등록자가 되어 생존을 위해 떠돌던 중 한국 남성에게 살해당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의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법적으로 선주민여성쉼터는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각각을 대상으로 하여 분화되어 있지만, 이주여성쉼터는 이 세 범주의 구분이 없고 동반아동까지 그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이주여성쉼터는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아동의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피해여성과 자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세 가지 폭력 피해 유형과 이에 필요한 지원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한 곳에서 종합해서 지원하기란 쉽지 않다. 이주여성쉼터의 경우 처음에 결혼이주여성 중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주 여성과 동반아동을 주된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을 가진 상담원들이 가정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등 다양한 대상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상담원들과 쉼터가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이주여성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선주민여성쉼터와 달리 이주여성쉼터에는 다양한 국적의 여성들과 아동들이 입소하기 때문에 이들과 상담원 간, 그리고 이들 서로 간에 의사소통 문제, 생활방식의 차이,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2) 쉼터의 외부 취업 정책과 자활지원센터 및 그룹홈

(1) 외부 취업 제한의 문제

이주여성쉼터의 목적은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다. 그런데 문제는 ‘인권’ 과 ‘보호’ 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이 인권의 전부일 수 없고, 피난처를 제공하고 심신의 피해 회복을 돕는 것으로 보호가 다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인권 보호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이라고 할 때, 이주여성쉼터에서는 이주여성들이 유엔사회권협약이 제시하고 있듯이 생존권을 비롯해 노동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권 등을 전반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주여성쉼터에서 외부 취업이 제한되고 있는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주민여성쉼터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는 퇴소 후 자립을 위한 준비 시설 외 외부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 자립을 위한 직업과 취업훈련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이주여성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주여성쉼터의 경우 “자활교육 실시와 취업 정보 제공, 취업 알선” 등은 쉼터 사업으로 명문화되어 있으나 “외부 취업 적극 지원” 을 명문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들의 외부 취업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는 ‘외부 취업’ 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서주민 쉼터처럼 명문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담당자와 쉼터 종사자들 간에 해석의 차이로 외부취업을 허용하기도, 허용하지 않기도 한다.

쉼터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것은 관리의 어려움은 있지만 쉼터 거주 이주여성에게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쉼터에서 심리치유를 위해 프로그램을 하는데 실제로 쉼터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보면 심리치유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못지않게 취업을 해서 돈을 벌면서 치유의 과정을 겪고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쉼터에 입소한 이주여성들의 경우 쉼터에서 받는 지원 외에도 개인적인 용돈이 필요할 때가 있고 쉼터에 입소해 있으면서도 본국에 송금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직접 돈을 벌어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을 사고 아이를 위해서 쓰고 본국에 보내고 또한 쉼터 퇴소 시

집을 구할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은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여성들에게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자립의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주여성들은 쉼터에서 나올 경우 지지기반이 매우 약하고 퇴소 시 집 보증금이나 당분간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준비를 쉼터에서 해야 한다. 즉, 쉼터 이후의 자활을 준비할 수 있는 거점센터로서의 쉼터 시스템과 사업이 필요하다.

(2) 자활지원센터와 그룹홈

현재 여성들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활지원센터와 그룹홈이 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나름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 자활지원센터는 현재 서울에서 한 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이주여성과 동반자녀를 대상으로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자활지원센터의 목적은 여성들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이들의 취업, 창업 능력을 개발하여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책하게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소기의 목적과 달리 직업교육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개발하는 데 뜻을 함께 하고 입소하려는 이주여성이 드물다. 이는 이주여성의 현실적·자율적 욕구와 자활지원센터의 관리 체계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자활지원센터 역시 자활을 위한 곳이라고 하지만 여성들에게 센터는 자율성이 담보된 그룹홈과 달리 또 하나의 쉼터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본국 송금이라는 당장의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주여성들에게 자활지원센터가 현실적 대안으로 수용되기 어렵다.

쉼터 퇴소 이후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자활을 위해 여성가족부 위탁으로 운영되는 그룹홈 3곳과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룹홈 1곳이 있다. 여성들이 쉼터 퇴소 시 그룹홈으로 연계되면 여성들은 이곳에서 일정 기간 기거하며 자활을 위한 준비를 한다. 대부분 취업을 해서 일부는 본국에 보내고 일부는 목돈을 마련하여 그룹홈에서 나간 이후 거처할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정이다. 그룹홈이 있기 때문에 서울 소재 쉼터들은 자활 지원은 일정 정도 그룹홈에 맡기고 보호처로서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그룹홈이 전국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쉼터에서도 자활 준비를 할 수 없다면 여성들은 자립의 기반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쉼터에서 퇴소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지역마다 자활지원센터나 그룹홈을 만들 여력이 없다면 쉼터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피해자로서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쉼터 퇴소 후 경제적·사회적·심리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며 자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정부 보고 체계와 예산 운용

이주여성의 쉼터 입소 사실에 대한 비밀 보장은 쉼터 운영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이 쉼터에 입소하면 쉼터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입소자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쉼터의 예산이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입소자의 인적사항을 지자체에 보고하는 것은 여성의 신상이 노출될 위험을 안고 있다. 실제로도 지자체를 통해 여성의 신상이 남편과 시집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다.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을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쉼터 예산과 관련하여 보면 여성가족부의 운영지원금 항목이 너무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예산을 융통성 있게 합리적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다. 프로그램을 일일이 제시해놓고 그 프로그램만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쉼터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어떤 쉼터는 치유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다른 쉼터는 그 밖에 다른 프로그램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쉼터 입소자의 구성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프로그램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런데 예산 항목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쉼터의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쉼터 예산에 이주여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예산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선주민과 비교하여 사회적 지원망과 개인적 관계망이 부족하고 쉼터 퇴소 이후 자활지원센터와 그룹홈과 같은 지원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쉼터는 쉼터 퇴소 이후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해

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들이 쉽터에서 심신을 치유하고 법률적 지원을 받고 스스로 설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기르는 것과 함께 경제적 능력과 기반을 갖추고 자립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예산만이 아니라 이주여성의 자립 지원 업무를 담당할 쉽터 종사자도 함께 배치되어야 한다. 현재 이주여성쉽터 종사자들은 선주민여성쉽터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지원을 다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원을 의사소통이 어렵고 문화도 다른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하고 있다. 여기에 자립 지원 업무까지 더하는 것은 쉽터종사자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된다. 따라서 쉽터종사자 인력과 이에 상응하는 예산이 충원되어야 한다.

V. 제언

1. 조사 결과 요약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에 입소해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제생활과 자립 전망을 조사하였다. 전국의 이주여성쉼터를 방문하여 이주여성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조사팀은 장벽에 가로막히는 느낌을 여러 차례 받았다. 폭력피해를 겪고 쉼터에 입소해 있는 이주여성들이 처한 조건과 상황은 이들이 경쟁적인 한국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이주자로서 살아남기에는 너무나 열악했다. 여성들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활용 가능한 자원을 동원하여 미래를 기쁘고 있었지만, 많은 이주여성들이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환경을 고려할 때 여성 개인의 노력과 임파워먼트만 강조해서는 쉼터 퇴소 후 여성의 자립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분명해보였다. 자립을 위한 준비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뿐 아니라 관계에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포괄한다면 더욱 그러했다.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을 통해 한국 가족의 가족구성원으로서 한국사회에 진입한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족 관계 내에서 불안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남편과 시집의 폭력이나 억압적 관계에서 벗어난다 해도 다른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하여 한국사회에 경제적·사회적으로 통합되어 살아가는 일은 어려워보였다. 그러나 III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쉼터에 입소한 이주여성들은 이러한 구조적 환경 속에서도 출신국과 한국에서의 노동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원으로서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키우고, 사회적 지지망을 발전시키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한국사회에 다시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노력과 의지가 반드시 구체적인 결실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직업 교육이나 훈련, 혹은 실제 취업의 경험을 갖지 못했고, 쉼터 퇴소와 함께 폭력적인 남편과 떨어져 독립하기를 희망했지만 저축 등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는 V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이주여성쉼터 정책이 가진 여러 문제와 한계들에 조

응한다. 현재의 쉼터 정책에는 쉼터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여성들이 퇴소 후의 삶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활동이 보장되지 않아 이들이 쉼터에 거주하는 동안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 자활지원센터와 그룹홈과 같은 쉼터 이후의 자립지원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쉼터가 그 모든 역할을 떠맡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의 쉼터 정책은 이를 위한 인적, 물적 토대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2. 제언

폭력피해로 인해 가족에서 탈출한 이주여성들에게 쉼터는 일차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이곳에서 이주여성들은 신체체적·정신적 폭력피해를 치유하고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설 준비를 하게 된다. 쉼터 이후의 삶을 위해 이주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폭력의 트라우마 치유와 자존감의 회복, 사회에 나가서도 살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이를 뒷받침할 개인적 능력의 획득,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체류권의 확보,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장 나가서 거처할 공간의 마련과 생활을 위한 경제적 토대의 마련이다. 이주여성들의 자립과 자활은 신체적·정서적·경제적 차원을 포괄하고 있는데, 쉼터에서는 1차 기능으로 신체적, 정서적 자립에 역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 조사에서는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과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살펴해보았다.

여성가족부 쉼터 정책상 이주여성쉼터 이후의 이주여성자립을 위해 취업 교육과 취업지원연계 연계를 하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으나 선주민 쉼터처럼 “외부 취업적극장려” 라는 문구가 빠져 있다. 그 결과 쉼터정책담당자나 쉼터 상담원들이 이 문구가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쉼터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취업을 제한하기도 한다. 이번 조사에서 찾아간 일부 개별 쉼터들은 자율성을 발휘하여 여성들에게 안전한 직장을 연계하고 여성들이 경제적 기반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면접 참여 이주여성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개인적 자원을 동원하여 경제생활을 꾸려가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

었다. 자립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주여성들의 내면적인 힘 역시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정책에서 여성들이 컴퓨터에 입소해 동안 공식적으로 취업을 장려하지 않고, 컴퓨터에 자립 지원을 위한 자원을 투여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여성들의 의지와 실천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미래를 위한 자립 준비를 어렵게 하는 현재의 컴퓨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이주여성컴퓨터의 사업에 이주여성 취업 지원 및 취업 연계를 포함시키고 정부 지원 예산 편성을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 그동안 이 점이 수차례 제안되어 왔는데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이주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컴퓨터 입소 이주여성들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 발굴 및 연계가 필요하다. 개별 컴퓨터들의 노력으로 여성들이 공장, 미용실 등에 취업해 있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혼 소송 진행과 자녀돌봄의 부담으로 정기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이혼 소송은 그 과정을 예측하기 어렵고 기한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취업을 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존재했다. 따라서 여성들이 법적 소송이나 병원 진료 등의 이유로 정기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정기적이거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부업이나 아르바이트, 시간제 노동과 같은 일자리를 발굴해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컴퓨터에서의 자녀 돌봄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양육의 부담 없이 정기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의 여성노동시장, 복지 체계, 재무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이주여성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출신국과 한국에서의 노동 경험이 제한적인 이주여성들로서는 컴퓨터 퇴소 후의 삶을 상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여성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의 부재는 여성들의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기반으로 하여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고 얼마의 소득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해 모호한 예상 밖에 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남편과 결별하여 홀로, 혹은 자녀와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여성들에게는 한국의 복지 체계에 대한 이해가 여성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이

다. 취업하여 소득을 얻게 되면 미래를 위해 어떻게 재무 설계를 하고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도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쉼터에서의 취업 지원 및 취업 연계를 넘어서는 보다 폭넓은 자립 정책을 논의를 제안한다.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주여성들이 쉼터에 입소해 있는 동안 취업 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면 자립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저임금과 비정규직화 등 선주민여성들에게도 녹록치 않은 여성노동시장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구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들의 자립은 어느 정도나 가능할 수 있을까? 인적 물적 자원이 없는 쉼터 거주 이주여성의 경우 자립대책 없이 기간이 다 되어 1차 쉼터를 퇴소한다는 것은 생존의 기반이 허물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면밀한 자립대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경제적 기반의 마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주여성의 전인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쉼터거주 이주여성의 전인적 자립을 모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 탁상공론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논의의 틀거리와 방향은 세울 수 있다고 본다. 인권 보호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이라고 할 때, 폭력피해이주여성의 자립은 젠더 관점에서 유엔 사회권협약이 제시하고 있는 생존권을 비롯해 노동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권 향유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이선 외. 2010. 『다문화 가족의 해체 문제와 정책과제』. 여성가족부
- 김현미. 2010. 「결혼이주 여성의 가정(Home) 만들기: 문화 접경지대 번역자로서의 이주여성」. Comparative Korean Studies. 18(3), 145-174쪽.
- 김현미 외. 2007.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과정에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류은주. 2009.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의 생애사 연구: 자립과 자립 이후의 사회적응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26권 2009년 8호
- 소라미. 2013.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선 이주여성」. 이주여성인권포럼. 『우리 모두 조금 낮은 사람들』. 오월의 봄
- 여성가족부. 2015. 「이주여성쉼터 입·퇴소 현황」
- 여성가족부. 201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 지침」
- 이선형. 2013. 「한국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과 정체성 : 구술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14. 「결혼이주여성 노동경험 분석: 노동의 경합 양상을 중심으로」 토론회 자료집
- 허오영숙. 2009. 「‘한국형 다문화주의’의 무너지는 꿈: ‘유아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여/성이론》. 통권 제21호
- 황정미. 2009. 「결혼 이주 여성의 가정폭력 경험: 성별 위계와 문화적 편견」. 김영옥외. 『국경을 넘는 아시아 여성들』.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참고 사이트>

-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다문화가족지원포털 <http://www.liveinkorea.kr>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자립’, 가능한가?>

토론문

온드라흐

(전 서울시 외국인 명예 부시장)

주선희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회장)

고미경(단아)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

윤지윤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주무관)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자립’, 가능한가?

온드라호 (전 서울시 외국인 명예 부시장)

이주여성들의 폭력 피해 보호시설 운영 11년 만에 나온 폭력 피해 이주여성 ‘자립’ 논의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 늦다고 보지만 이 연구를 토대로 이주여성 쉼터는 단순히 폭력피해이주여성을 보호하는 시설이 아닌 이들의 앞으로 한국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본 발제에서는 쉼터 이용 중인 27명의 이주여성에게 심층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그들의 본국 및 한국 결혼생활 및 노동 경험 현 주소, 미래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사례로 나와 상황 파악 및 현실성에 공감합니다.

설문조사에서 제기된 쉼터 거주 이주여성의 상황은 :

-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비자 형태가 안전하지 못하고, 쉼터에서 해결이 나지 않으면 한국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돌보거나, 결혼생활에서 있었던 부부간이 ‘한을’ 풀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될까봐 두려움이 있다는 것과 쉼터에 있을 경우 사회에서 ‘분리’ 되는 느낌을 받으며,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도 취업 알선과 일자리제공이 필요하다는 것.

- 이주여성쉼터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인권보호’ 를 목적으로 하며 운영하기 때문에 이주여성들이 자활에 대한 욕구와 현실을 속 깊이 공감하면서도 제한된 지침과 예산을 따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은 가장 믿고 있는 배우자,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를 안고 쉼터에 입소하여 심리적 안정, 생활안정, 건강보호가 우선이지만 현실상 미래에 대한 불안감, 폭력 및 인권 침해로 인해 정체성이 약해 자아 보호를 못한다는 생각에 심리 치료, 한국어교육 등을 받는 것이 ‘가시방석’ 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력피해 이주여성들도 쉼터에 있으면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일원으로서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자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니다. 실태조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들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 발굴 및 연계를 일자리 네트워크 기반 마련을 위해서 많은 교육과정, 노동시장 전문 종사자 상담 등 자립 대책 정책이 시급합니다.

이주여성쉼터의 현주소

주선희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회장)

쉼터의 기능은 입소자의 안전한 보호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곳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이주여성쉼터는 다양한 여성폭력을 다 다루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제도적인 한계와 인력부족, 법률적 한계로 어려움이 있다. 입소자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기 위한 곳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쉼터의 환경은 자립과 취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입소한 여성들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여건들이 있다, 그 여건들이 자립을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선행 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민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주여성을 지원할 때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이주여성들의 취업과 자활에 대한 욕구 : 이주여성의 취업과 자활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은 편이다. 이주여성의 취업현장은 국적과 언어구사능력, 학력에 따라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으나 거의 대다수는 부업이나 생산직 단순노동에 종사하고 있고, 아이를 양육하며 취업을 하기 에는 선주민과 같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쉼터에 거주하는 동안에도 자녀와 동반 입소한 경우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자립을 위한 한국어 공부나 취업 현장에 나가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다. 그렇다고 양육을 위해 친정 부모님을 초청하는 것은 자립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중요한 체류의 안정성이 보장되었을 때에나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다국적 양육을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컴퓨터의 보호 및 자립자활 기능의 한계 : 현재 컴퓨터의 사업내용에는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을 위한 지원활동이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연구사례에서도 컴퓨터이용자들의 욕구 면에서도 컴퓨터에 있는 동안에 일을 하거나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도 있겠으나 먼저, 컴퓨터의 비밀보장과 특별보호를 해야 하는 의무를 다 해야 하는데 취업활동을 하다 보면 아무리 주의를 준다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컴퓨터의 위치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연구에서는 컴퓨터와 공장 간에 서로를 보증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구인구직을 하고, 이를 통해 임금, 안전(성희롱, 성폭력), 사회보험등이 보장되는 등 안전한 일자리를 연계하자고 하지만 문제는 컴퓨터와의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보장 될 수 있나?라는 한계점이다.

자립자활교육의 한계는 입소자가 국내 거주기간, 언어 수준, 입소 예정기간으로 인해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립자활교육을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혼을 준비 하거나, 장기간 입소자에 대한 개별 맞춤교육을 지원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립자활교육은 단순교육 외에 개별욕구에 맞춘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 취업정보의 제공에 있어서도 정보제공이 될 수 있겠으나 그보다는 컴퓨터 퇴소 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연계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중의 하나인 이주여성들에게 이러한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자립’은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실현의 문제이다

고미경 (단아)⁴⁾

-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에 대한 차별의 극단적인 표현이며, 여성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인 동시에 사회적 범죄행위이다.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가정폭력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명백한 사회적 범죄행위임을 선언한 것이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로서 고려되어야함을 의미한다.
- 쉽터로 피신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폭력 피해에서 벗어나 살아남기 위해 집과 재산을 모두 두고 탈출한 상황이며 자신의 힘으로 피난처를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범죄 피해자’들이다. 자신 명의의 재산이 있다 해도 현재 가해자가 점유·이용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해자는 노출의 위험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제4조 제1항 제3호)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과 법률지원, 자립자활교육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고(제8조), 국가는 ‘보호시설에 대한 경비를 보조’ 하도록(제4조 제4항, 제7조의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6월에는 법개정을 통해 제4조 국가등의 책무 조항에 ‘피해자 신변노출방지 및 보호·지원체계 구축’이 추가되기도 했다.
-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에게 ‘자립’은 가해남편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

4) 고미경(단아) :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 쉽터장

한 기본적인 조건이며 폭력피해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우선 과제이다. 자립에 실패했을 때 피해자들은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거나 가해자(남편)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여 폭력재발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립의 문제는 가정폭력 예방과도 맞닿아 있다.

〈사례〉 쉼터에 입소한 S씨는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립을 원했다. 그러나 남편의 폭력으로 상해를 입어 치료비 등으로 지출이 많은데 비해 수입은 너무 적어 퇴소 이후의 생활비, 치료비, 자녀의 양육비 등 자립비용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제적 자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에 도움 받을 곳도 전혀 없었다. 결국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게 된 S씨는 자립을 포기하고 남편이 있는 집으로 귀가하였다. (2014. 3.)

-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은 피해여성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임금노동이나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충족하며,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정서적으로 누구에게든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⁵⁾
-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지난 3년간 ‘가정폭력 쉼터 입소자의 직업현황’을 보면 전업주부가 62.4%이고 단순서비스직 등 그나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이 29.6%였다(〈표1〉참조). 그마저도 쉼터로 들어오면서 남편의 추적을 피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30위)인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인 57.0%⁶⁾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 많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5) 정춘숙(2015),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6) OECD에 따르면 2014년 15~64세 기준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1위 국가는 아이슬란드(84.3%)다. 2위는 스웨덴(78.8%), 3위는 덴마크(75.6%)였다. 그 뒤를 캐나다(74.6%, 6위), 핀란드(73.5%, 8위), 독일(72.4%, 11위), 영국(71.7%, 12위), 미국(67.2%, 16위), 프랑스(67%, 19위), 일본(65%, 20위) 등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62.8%)에도 크게 못 미친다.

〈표〉 가정폭력 쉼터 입소자(성인)의 직업현황

(단위 : 명, %)

연도	계	전업주부	단순서비스직	농림수산물노동자	농림수산업	생산직	사무직	자영업	전문관리직	기타
2012	2,518	1,621	324	12	37	83	51	138	80	172
	100	64	13	1	2	3	2	6	3	7
2013	2,755	1,718	298	12	60	74	73	202	108	210
	100	62.3	10.8	0.4	2.2	2.7	2.6	7.3	3.9	7.6
2014	2,551	1,557	312	20	33	75	74	149	74	257
	100	61	12.2	0.8	1.3	2.9	2.9	5.8	2.9	10

* 출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오랜 기간 전업주부로 살아오며 취업을 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은 너무도 어려운 숙제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가해자를 피해 자신의 삶의 터전인 거주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자원에서 벗어나 새로운 네트워크와 자원을 형성해야 하는 과제까지 안게 된다.

○ 2013년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⁷⁾를 살펴보면, 가정폭력 쉼터 이용자가 쉼터에서 제공받기 원하는 서비스에 대해 취업지원(구직, 창업관련 정보제공, 취업알선)이 45.8%⁸⁾로 다른 서비스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중복응답). 그러나 이들의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현

7)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를 위해 2013년 10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100개소와 쉼터 63개소의 내담자 267명을 대상으로 우편설문 조사 진행.

8) 개별상담 및 치료 38.1%, 법률관련 상담, 지원, 연계 38.1%, 의료비 지원 및 의료기관 연계 30.5%, 자녀학업관련(학습지원, 학비지원 등)28.0%

실적 문제와 제약이 너무 많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신변보호가 확보된 상태의 일자리 연계나 지원체계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비공개시설인 가정폭력 쉼터의 노출문제로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을 갖기는 어렵다. 또한 거주 기간이 6개월(최장 9개월)인 단기쉼터에서 폭력피해 후 유증 치료와 심리적 자립지원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2015년 3월 기준/ 개소,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단기	일반	47	9	1	2	1	1		1	13	4	2	3	2	2	2	3	1
	가족 ⁹⁾	16	1	1	1		1	1			1	1	1	2	2		3	1
중장기		4	1	1			1			1								
장애인		2	1				1											
합계		69	12	3	3	1	4	1	1	14	5	3	4	4	4	2	6	2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년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지침서’

○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법률에 근거한 제도적 지원은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되는데, 제도적 지원은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권리’와 존중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하며 가정폭력 피해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자립 관련 내용이 명문화된 것은 2006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법’이라 칭한다.)이 개정되어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이 쉼터 업무에 포함되면서부터였다. 이를 근거로 쉼터 입소자들에게 직업훈련비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2011년부터는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제로 전환되면서 개인정보 노출과 교육비 자기부담금의 문제로 쉼터의 직업훈련은 사실상 진행이 멈춘 상태였다.

이에 대한 현장의 문제제기가 계속되면서 2013년 7월 보호법 개정을 통

9) 가족쉼터 : 2011년 신설되어 10세 이상 남아 동반 피해자를 우선 입소하도록 한 단기보호시설로, 서울만 새로 개소한 곳이고 나머지는 일반 단기쉼터에서 가족쉼터로 전환하여 인가받은 곳이다.

해 쉼터 입소자에 대한 직업훈련비 지원이 법제화되고, 2014년부터 직접지원이 재개되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피해자들의 자립에 큰 기반이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자립’ 그 자체가 아닌 ‘자립자활교육의 실시’ 일 뿐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이들이 교육 수료증이나 자격증 하나를 딴다고 바로 취업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쉼터의 직업훈련은 단기 취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요양보호사, 한식조리사, 아이돌보미 등 전통 여성 직종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높은 급여수준이나 향후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또한 가정폭력 쉼터에서 퇴소한 후 폭력가정에서 벗어나 독립하려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입소자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미성년 동반자녀¹⁰⁾의 양육문제는 경제활동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정부의 자립정책은 단기적·일시적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피해 여성들의 욕구를 반영한 장기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009년에는 법개정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¹¹⁾’이 부여되었으나, 배당되는 주택이 많지 않은데다 반드시 쉼터 6개월 이상 거주해야하고 퇴소한지 2년 이내에 신청해야하니 보증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여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신청물량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10) 여성가족부 통계에 의하면 2014년 한 해 동안 전국 가정폭력 쉼터 이용 인원은 총 4,140명으로 성인이 2,551명(61.6%), 동반아동이 1,589명(38.7%)을 차지하고 있다. 자녀의 나이는 3세 미만이 14.4%, 3세~6세가 30.6%, 7세~12세가 31.8%, 13세~18세가 19.1%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11)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신청자격 : 쉼터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퇴소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기준 입주자격도 충족되어야 한다.

○ 2013년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중 쉼터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자 조사에서 퇴소 후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로는 주거지원이 36.1%로 1순위였으며, 자립지원 지원금 18.5%, 의료지원 11.8% 순이었다. 2009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시행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정책 수립을 위한 피해자 욕구조사’¹²⁾에서도 쉼터 입소자들은 퇴소이후의 삶에 대해 ‘생계곤란(34.38%)’ 과 ‘거주지 곤란(31.25%)’ 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쉼터에서 만기가 되어 퇴소하는 피해여성들에게는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나 거주지 마련을 위한 정착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자녀를 동반한 여성들에게 이혼이 완료되어 취업을 할 때까지의 최소 생계비와 주거지원은 생존과 결부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 정부에서는 ‘성폭력 쉼터’에 1년 이상 입소한 자로서 만 18세 이상인 피해자의 경우는 수급·비수급자 구분 없이 퇴소자립금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¹³⁾ 이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모자원’을 퇴소하는 모자가정에도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성매매 지원시설’에서도 퇴소자에게도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여 일정액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 관련 타법안이나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보더라도 보호법 안에 자립지원금 지원이 명문화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

<사례> K씨의 남편은 알콜중독이었으며, 아이들을 죽이려한 적이 있을 만큼 가정폭력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쉼터로 피신한 K씨는 폭력 피해 후유증으로 허리를 다쳐 직장생활도 어려운 상태였다. K씨 명의의 빌라(2억 이내)가 있으나 남편이 이미 집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은 상황이었고, 그 집에는 시부모가 살고 있었다. 돈이 한 푼도 없던 K씨는 집을 싼값에라도 팔고 싶어 했지만 시부모가 부동산에 집을 보여주지 않아 팔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빌라 때문에 K씨는 시설 비수급자가

12)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9-21 연구보고서

13) 「201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p91.

되어 의료급여증을 받지 못했고, 쉽터도 부족한 의료비로 K씨의 치료를 계속 지원하기는 어려웠다. 돈이 없는데다 노출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서 일반진료를 받기 어려웠던 K씨는 어린 동반자녀들을 데리고 2시간 가까이 걸리는 타지역에 가서 병원진료를 받아야만 했다.

남편이 대출금 이자를 내지 않아 집은 경매로 넘어갈 상황에 처했고, 만약 낙찰가가 낮을 경우 K씨는 오히려 남편의 빚을 떠안게 될 형편이 되었다. 쉽터 입소기간 만기가 되었을 때 초등 4학년과 5학년인 아이들이 학교를 또 옮겨가는 것도, 다시 쉽터로 가는 것도 원하지 않아 K씨는 자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나 쉽터 퇴소 후, K씨 명의의 빌라 때문에 어떠한 사회복지 혜택도 받을 수가 없었다. 생활이 너무 어려운 K씨에게 쉽터의 수익사업 비용으로 몇 개월간 20만원씩 지원하였고, 후원물품으로 들어오는 쌀, 김치, 식료품 등을 나누며 돕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분들에게 자립지원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2014. 3-2015. 4 현재)

- 정서적 자립은 경제적 자립의 중요한 동인이 된다.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의 기반이 마련되고 안전한 거주지가 마련되었다 해도 여전히 정서적 자립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서적·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취업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폭력상황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정춘숙(2015)은 성평등 의식이 자립의지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쉽터는 ‘보호’ 시설 이상의 의미와 기능을 가져야 한다. 쉽터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성평등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의식교육 프로그램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며, 상담자와 내담자 간 평등한 소통구조를 가지고 여성들이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실험해보도록 격려하며 피해자 중심의 운영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피해여성들의 숙식, 치료, 법률 등 실질적인 문제해결 뿐 아니라 자립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한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정부 역시 가정폭력 문제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적인 소극적 보호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의 보장과 보다 확실한 안전의 확보, 자립에 대한 권리 실현이라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며 이를 반영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현 지원체계와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제시는 주로 민간단체의 현장활동가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내용 안에는 피해자들의 고통과 희망, 다양한 욕구들이 담겨있다. 이들이 가진 현장성과 구체성은 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지원에 대하여

윤지윤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주무관)

□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지원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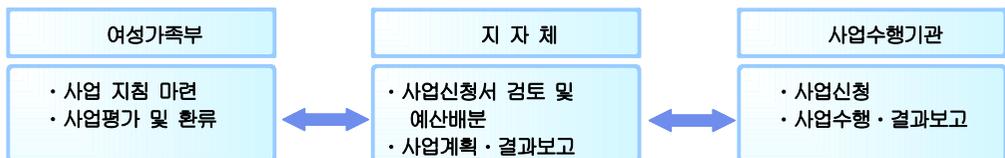
○ (목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한 자립지원 및 인권보호

○ (근거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연혁)

- '04년 외국인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시작(2개소)
- '07년 외국인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확대(4개소)
- '09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별도 사업 분리(복권기금 지원)
이주여성 쉼터 18개소, 이주여성 그룹홈 1개소 지원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설치계획 수립 및 부지선정
- '10년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1개) 개소('10.11.4.)
- '11년 이주여성쉼터,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확대(전체)
- '13년 이주여성 보호시설 4개소 확대
- '14년 이주여성 보호시설 3개소 확대(쉼터2, 그룹홈1)
- '15년 이주여성 보호시설 1개소 확대(쉼터1)

○ (추진체계)



□ 주요세부사업

국고 지원 이주여성쉼터 25개소 운영, 이주여성 그룹홈(주거지원 시설) 2개소(서울) 운영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지원센터 1개소(서울) 운영하고 있음.

* 이주여성쉼터 시도별 현황

(' 15.6.기준, 단위: 개소)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수	25	4	1	2	1	1	1	1	3	1	1	1	2	2	2	1	1

※ 2015년 1월 국비 추가지원(전남1개소)

□ '15년 상반기 추진실적

이주여성보호시설 1개소 확대 운영(1월), 보호시설 종사자 소진예방 및 상담심화교육 실시, 상반기 이주여성 보호시설 현장 지도 및 점검, 종사자 처우개선

□ '15년 하반기 추진계획

이주여성 폭력예방 홍보를 통한 대국민 및 이주여성 인식개선, 보호시설 종사자 소진예방 및 상담심화교육 실시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이주여성 보호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향후 보완 방안 모색, 하반기 이주여성 보호시설 현장 지도 및 점검을 통한 환경 질 제고